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원행정컨설팅학과

민원행정컨설팅전공

김 창 현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조문석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 Focusing on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s－

2019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민원행정컨설팅학과

민원행정컨설팅전공

김 창 현

석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조문석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 Focusing on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s－

위 논문을 공공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원행정컨설팅학과

민원행정컨설팅전공

김 창 현

김창현의 공공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일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국 문 초 록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민 원 행 정 컨 설 팅 학 과

민 원 행 정 컨 설 팅 전 공

김 창 현

우리는 지금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인간의 기계화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물결을 따라 여러 분야에서 행정의 수요도 양적, 질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어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기대하는 요구(need)나 욕구(want)도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기본권 존중과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인·허가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들이 행정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등을 통해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기관과 국민의 복잡한 민원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행정, 구제행정 등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도우미 역할을 해 주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가 바로 행정사제도이고, 그러한 행정업무의 대행이나 대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공인자격을 가진 사람이 행정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사제도가 행정사법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제도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행정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행정사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1897년 대서소규칙 시행으로부터 대서업제도가 시작되었고, 1961년 행정서사법 제정으로 행정서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로서 행정서사가 하는 일들이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필 작성이었다. 그러다가 1995년 행정서사법에서 행정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부터는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작성·제출, 인·허가 민원행정의 대리(代理), 번역, 행정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위탁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3종류로 나누어 고급행정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부터 행정사제도는 일대 변화와 혁신시대를 맞게 되었고, 당초 경력공무원에게만 자격을 부여했던 제도를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전한 행정사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행정사법이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은 1999년에는 행정사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협회에 등록 권한도 주지 않고 있어 행정사협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7개 행정사협회로 분산되어 운영한 관계로 체제의 다양성, 업무수행의 폐쇄성 등으로 행정사 상호간 활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일관성도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사의 92.5%가 행정사협회 등록제 및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다수의 행정사들이 ① 행정사협회 등록제 부여, ② 행정사협회 단일화, ③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④ 행정사 법인설립 허용 등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사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이다.

2018년 말 현재 행정안전부의 행정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취득자는 총 353,725명(경력행정사 351,875명, 시험합격 행정사 1,850명)으로 이중 일반행정사가 349,995명(99%)으로 가장 많고, 기술행정사 3,207명(0.9%), 외국어번역행정사 523명(0.1%)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사제도의 발전은 행정사업 활성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데 현재 353,725명의 행정사 중 실제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행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는 약 2.5%인 8,789명에 불과하고, 영업 행정사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하 젊은층이 16.7%인 1,467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행정사업이 활성화 되고 행정사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셋째, 행정사 교육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이다.

행정사 업무가 과거의 행정서사제도 시기에 수행했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상의 5,445종의 민원처리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인·허가 등 모든 행정분야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관련 업무들을 수행하는 고급행정전문분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분야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행정사 교육제도는 실무교육 60시간과 자율적 연수교육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무교육은 행정사업 신고를 위한 통과 의례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은 현재 시스템도 없고 실시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사업을 하는 행정사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① 행정사 실무교육 시간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73%를 차지하고 있고, ② 실무교육 시간을 200시간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34.5%나 되며, ③ 연수교육 방법으로는 집체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자는 의견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실무교육의 만족도는 77.5%가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무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인 문제점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사제도의 측면과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의 측면으로 나누어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사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은 ① 행정사 운영부실에 따른 행정사협회 의무등록제로 개선, ② 행정사협회 단일화, ③ 행정사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④ 행정사제도 활성화 및 행정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⑤ 행정기관, 국회, 지방의회 등에 민원행정 상담관이나 전문 관제 운영 등이다.

둘째,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은 ①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② 행정사 교육시스템 개선, ③ 경력행정사와 시험합격 행정사에 대한 차별 및 심화교육 실시, ④ 행정사 실무교육 시간조정 개선, ⑤ 행정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주관기관 개선, ⑥ 대학교나 대학원에 행정사 교육과정 개설, ⑦ 행정사 실무교육 시기 개선, ⑧ 행정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 ⑨ 행정사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⑩ 분야별 행정사 교육 과목 개발 등이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로 제시한 행정사제도 및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15개 항목에 대하여 연구 과제를 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여 행정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행정사법, 행정사제도, 행정사, 행정사 운영실태, 행정사 교육 프로그램, 행정사협회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 3 절 연구의 흐름도	6
제 2 장 행정사제도의 운영현황과 이론적 논의	7
제 1 절 행정사제도의 의의 및 특징	7
1. 행정사제도의 의의	7
2. 행정사제도의 필요성 및 기능	9
3. 행정사의 유형과 업무범위	6
4. 행정사의 자격취득 및 업무신고	8
제 2 절 우리나라 행정사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52
1. 행정사제도의 유래 및 역사	3
2. 행정사법 제정 및 개정 연혁	30
3. 행정사 자격 변천사	33
제 3 절 행정사제도의 운영현황	3
1. 행정사 자격취득자 현황 분석	35
2. 행정사업 신고 및 영업현황 분석	39
제 3 장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84

제 1 절 행정사 교육제도의 개요	84
1. 행정사 교육의 법적근거	48
2. 행정사 교육의 필요성	49
3. 행정사의 교육방법 및 교육기관	50
제 2 절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51
1.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요	51
2. 행정사협회의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태	53
제 3 절 유사 전문자격사와의 교육프로그램 비교분석	35
1.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분석	53
2. 유사 전문자격사 교육프로그램 분석	56
3. 유사 전문자격사와의 교육프로그램 비교분석 결과	60
제 4 장 행정사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46
제 1 절 연구설계	4
1. 자료수집	64
2. 설문지 구성	64
3. 분석방법	66
제 2 절 분석결과	6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
2. 행정사 협회의 역할과 개선방향	7
3. 행정사제도의 운영	7
4. 행정사 교육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87
5. 행정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	48
제 3 절 요약 및 시사점	8

제 5 장 결 론	89
제 1 절 요약 및 결론	9
1. 행정사제도의 개선방안	8
2.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	29
제 2 절 정책제언	8
참 고 문 헌	99
부 록	101
ABSTRACT	113



표 목 차

[표 2-1] 연도별 행정사법 개정 현황	03
[표 2-2] 연도별 행정사 자격제도 현황	33
[표 2-3] 연도별 행정사 자격취득자 현황(시험 면제자 포함)	5 3
[표 2-4] 시험시행 회수별 행정사 자격취득자 현황	7 3
[표 2-5] 연도별 행정사업 신고 및 영업현황(최근 5년간 운영실태)	0 4
[표 2-6] 영업 행정사 경력별 현황(최근 5년간 운영실태)	2 4
[표 2-7] 시·도별 행정사업 현황(행정사 종류별, 영업상황별)	4 4
[표 2-8] 시·도별 행정사업 현황(경력별, 연령별)	7 4
[표 3-1] 일반행정사협회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표	5 5
[표 3-2] 유사 전문자격사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표	0 6
[표 3-3] 유사 전문자격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표	1 6
[표 4-1] 설문지 구성 내용	56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6
[표 4-3] 행정사 협회의 역할과 개선방안	27
[표 4-4] 행정사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57
[표 4-5] 행정사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8
[표 4-6]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종류에 관한 제언(설문조사 의견)	4 8
[표 4-7] 행정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 정책제언(설문조사 의견)	4 8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 분석의 틀	6
[그림 2-1] 행정사 종류별 자격취득자 현황(시험면제자 포함)	6· 3
[그림 2-2] 연도별 행정사 자격취득자 현황 추이(시험 면제자 포함)	6· 3
[그림 2-3] 행정사 종류별 시험시행 자격취득자 현황	8 3
[그림 2-4] 시험시행 회수별 행정사 자격취득 현황 추이	8 3
[그림 2-5] 최근 5년간 행정사 영업 및 휴업 현황	0 4
[그림 2-6] 최근 5년간 행정사 영업 및 휴업 실태 추이	1 4
[그림 2-7] 영업 행정사 경력별 현황	34
[그림 2-8] 최근 5년간 영업 행정사 경력별 현황 추이	3 4
[그림 2-9] 행정사업 연령별 현황	74
[그림 4-1] 응답자의 성별 분포도	86
[그림 4-2]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도	86
[그림 4-3]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도	96
[그림 4-4] 응답자의 자격취득별 분포도	96
[그림 4-5] 응답자의 행정사 종류별 분포도	07
[그림 4-6] 응답자의 업무경력별 분포도	07
[그림 4-7] 응답자의 활동지역별 분포도	17
[그림 4-8]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도	17
[그림 4-9] 행정사 협회별 설문조사 참여 분포도	3 7
[그림 4-10] 행정사협회 역할	37
[그림 4-11] 행정사협회의 단일화 여부	47

[그림 4-12] 행정사협회 의무등록 여부 의견	57
[그림 4-13] 지난 1년간 주 수임업무	67
[그림 4-14] 지난 1년간 주 수임업무의 1건당 평균 수임료	77
[그림 4-15] 연간 행정심판 수임건수	8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는 지금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인간의 기계화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물결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에서 행정의 수요도 질적, 양적으로 복잡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국민들의 행정기관에 기대하는 욕구도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동시에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기본권 존중과 권리의무 관계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신청, 청구, 신고업무 등의 각종 민원행정도 형식요건, 법률요건, 기타 서식작성 등 사전검토 및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개인의 권리침해로 인한 다툼으로 분쟁조정이나 행정심판 등의 개인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나 국회를 통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민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행정사』가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복잡한 민원서류 등을 대행 또는 대리하여 처리해 주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행정사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행정사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사 자격증 제도는 1961년에 도입되었고, 1995년에는 ‘행정서사’라는 용어가 ‘행정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행정사의 자격시험은 그동안 퇴직공무원들의 무시시험제로 독점해 오다가 2010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¹⁾로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의 업무는 대부분 행정기관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보호, 권리구제 등과 직접 연관된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일반 국민들은 단순한 민원서류만을 작성하고 대행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행정사를 통한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제출이 감소되는 실정이었고, 각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행정사제도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의 업무 중 일반인들이 쉽게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로서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처리하는 행정심판청구서,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청심사청구서, 법령상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민원행정처리에 따른 이의신청서, 법인설립, 개인이나 법인 간의 협약서, 약속서 등 전문행정사의 도움 없이는 민원서류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행정절차가 복잡한 행정민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행정사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 분야가 분명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 제도의 존재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7.16일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사법을 폐지하기로 하고 행정사법 폐지와 관련하여 시·도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폐지 찬성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2002.1.1부터 행정사업을 자유업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었으나 당시 행정자치부의 판단이

1) 이 사건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헌재 2010. 4. 29. 2007헌마910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헌법재판소 판례 참조)

행정사가 없어도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행정사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과, 행정사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없어 전문자격사로서 관리할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폐지제안을 하였으나

1999년 11월 국정감사에서 “규제개혁 대상인 법무사 등 11종의 전문자격사 중 다른 업종 단체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단순 겉보기 실태만 보고 행정사법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자, 행정자치부는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재심 요청을 하고자 법제처에 행정사법 폐지법률(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성호, 소순창, 임소정, 2002: 22~25).

그 이후 행정자치부는 “행정사법이 폐지될 경우 행정사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져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변호사 등 타 자격사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영세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자질이 부족한 무능력한 행정사가 난립하게 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어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정사법의 존치로 인한 순기능과 폐지 시 부작용 등을 심층 검토하여 행정사법을 폐지하는 것보다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행정자치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행정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었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02. 11. 1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행정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조건으로 행정사제도의 존치를 의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사제도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 행정사들의 안이하고 태만한 직무수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폐지의 결정을 받기까지는 1961년 행정서사법이 제정되어 공식적인 자격제도로써 행정사제도가 시작되고 전문자격자사인 행정사 활동이 시작된 이후 행정사들의 소극적인 행태와 사회적 역할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으며, 행정사들이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 미흡, 진취적인 직업관 역량 부족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행정전문가로서 지속가능한 직무교육시스템을 갖춘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미흡한 제도적 기반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정사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과 같이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리구제 수단의 하나로서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격제도이며, 각각의 전문자격제도가 맡고 있는 자신의 직업적 영역이나 범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큰 범주 내에서 각자의 사회적 역할도 다르므로 행정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행정사 스스로도 직업관에 대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사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현행 행정사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행정사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국으로서 법률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타 전문자격사와 함께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행정상의 분쟁을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자격제도로 활성화 시켜 행정서비스시장에 대한 국가경쟁력제고와 행정사 제도의 미래발전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행정사제도에 대하여 이미 행정안전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구 분석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존치하기로 결정된 제도로써 여기서는 행정사제도의 존재문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사제도의 의의 및 특징, 우리나라 행정사제도의 역사, 현행제도의 운영실태 파악, 현재 침체되고 난립된 행정사 및 행정사협회 운영실태, 행정사 전문화를 위한 교육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유사 자격사와 차별화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현행 행정사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행정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행정사제도의 문제점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행정사제도의 업무영역 확대 및 기능강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전문 행정사 진로개척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창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개발 하여 행정사제도의 체계화 및 제도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사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범위 내에 한정하였다.

특히, 행정사제도에 있어서 행정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실무경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아무리 행정사 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업무능력이 없다면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행정사 역할과 업무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업무능력과 해결역량을 키우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육제도나 교육프로그램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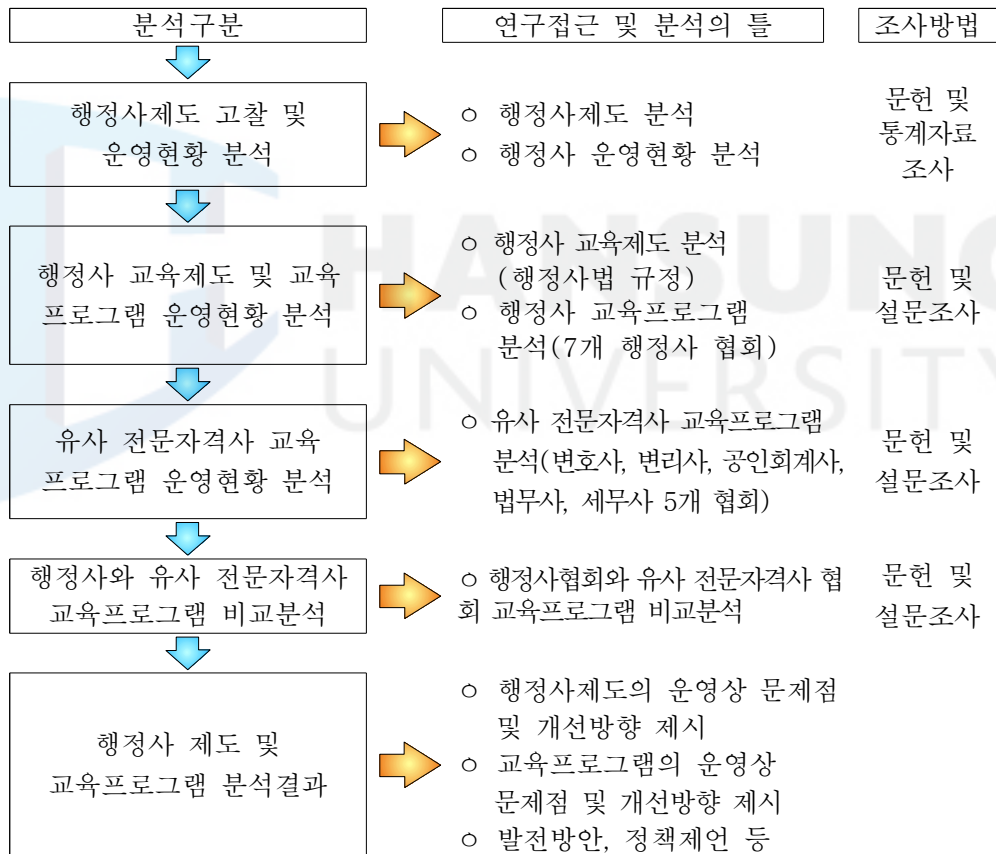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사제도와 관련한 교육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교육프로그램은 잘 운용되어 행정사들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변호사 등 유사 전문자격사에 대한 정착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행정사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등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각종 연구논문이나 관련법령 등 문헌연구와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행정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를 위한 논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등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 행정사제도의 의의 및 특징, 행정사의 역사, 행정사 운영현황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해 보고자 하며, 제3장은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타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제4장에서는 행정사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한 행정사제도, 교육제도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결론적 논지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는 [그림1-1]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림1-1] 연구 분석의 틀

제 2 장 행정사제도의 운영현황과 이론적 논의

제 1 절 행정사제도의 의의 및 특징

1. 행정사제도의 의의

『행정사제도(行政士制度)』란 행정사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공인 자격을 가진 행정사가 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사법에서 정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서류번역, 각종 신청, 청구, 신고 등의 인허가 민원관련 업무처리, 행정에 관한 상담, 자문의 응답 등 행정관련 업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여 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행정사에 대한 법령상의 개념 및 정의는 없으나 행정사법상의 행정사의 업무범위 등을 살펴볼 때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사법에서 정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번역 업무, 행정상담 및 자문, 위탁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과 신청, 청구,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 또는 대리해 주는 국가전문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좀 더 상세한 정의로는 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편람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행정안전부, 2012: 3).

이외에도 행정사 개념에 대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행정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정의한 “행정사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제출 또는 대행하는 자격사”를 말하며, 행정사제도에란 “행정관계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행정사협회**는 “행정사란 행정사법에 기초한 국가 공인자격사로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인허가 등의 신청서류의 작성과 더불어 제출절차의 대리, 유언서 등의 권리의무, 사실증명 및 계약서의 작성 등을 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한행정사협회는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자격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일반행정사협회는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로 행정안전부에서 정의한 개념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서로 유사하고 다양하며 명확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여기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의한 『행정사』 개념을 바탕으로 행정사법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용어로서 서두에서 연구자가 정리한 『행정사제도』 내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행정사제도의 필요성 및 기능

가.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 필요성

행정이란 “국가적 공동체에 있어서 구체적 법 집행으로 국가 목적이나 국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복리 및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작용”²⁾으로서 행정과 국민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첫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둘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셋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체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에 관한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되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개인의 사적공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은 물론

2) 김백유(2016),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 : 17쪽, 도서출판 한성

행정절차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정행위(실정법상 행정처분; 행정심판법 제2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인 자유와 권리, 인권 등이 존중되어야 하고,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 행위”를 의미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원칙을 준수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① 비례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행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처분은³⁾ 법규와 행정목적에 적합해야하며, 법규에 위반하면 위법처분으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면 부당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청이 국민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민이 행정기관을 향하여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복잡 다양한 사적 공법행위를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원행정 전문가인 행정사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대행 또는 대리해 주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일상이 바쁜 영세민이나 장애인 등 행정기관의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을 대신하여 행정사가 민원처리를 대리해 주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는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행정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구제행정 전문행정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를 통해 국민의

3) 이병태(2016), 법률용어사전(네이버 지식백과, 행정처분 - 행정행위 인용)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사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처리 시간이 매우 장시간 소요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고, 실제로 많은 행정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민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제도는 행정과 국민의 불가분의 관계로서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사회적으로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춘 전문자격자로서 체계적인 제도정착과 함께 지속가능한 전문자격제도로 활성화되도록 꾸준한 연구와 시대적 변화에 걸 맞는 행정사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행정사제도의 사회적 필요성

1) 행정사의 업무영역 및 업무능력 인식재고

“행정사제도가 존폐여부까지 논의하게 되었던 원인은 그동안 행정사들이 단순히 행정서류에 대한 대서 수준에 머무르는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며, 행정절차에 따른 법률요건, 형식요건 검토 등의 법적으로 접근해야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자질 및 역량 부족과 이로 인해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행정사제도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거나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전문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호웅, 2004: 20-26).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사의 업무영역은 소청심사, 행정심판, 환경 분쟁조정 및 재정신청,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결신청,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신청 등 전문적인 영역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신청, 청구 등을

담당하고 있어 법률적 지식이나 행정절차 등을 잘 알 수 없는 일반시민들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들로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와 같은 법률 및 행정전문가라도 해당 행정업무를 수행해보지 아니한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정사들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왜 행정사들이 자기 영역에서 확고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나 역량부족 등의 부정적인 인식들로 국민들로부터 평가절하 되고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행정사 자격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되지 않고 주로 퇴직공무원들에게 공무원 경력만으로 행정사 자격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의식을 갖지 않고 퇴직 후 부업정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의한 행정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8년 12월말 현재 전국에서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총 8,789명중 60대 이상이 5,659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고, 40대 이하는 1,467명으로 1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⁴⁾

이러한 행정사의 인적구조에서 재교육훈련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기능력계발 등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행정사 고유 업무조차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행정사에 대한 불신과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동안 행정사 자격시험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2013년부터 뒤늦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의한 자격취득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이론을 겸비한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퇴직공무원에게 시험전부 면제에 의한 무시험 자동 자격부여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민에게 유익하고 국민의 생활편익과 권리구제라고 하는 커다란 목적 아래서 행정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 대한민국정보공개 포털사이트 정보공개청구 자료, 시도별 행정사 현황 자료(2018.12말 기준) 인용 <https://www.open.go.kr/>

2)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사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국민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권리구제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 즉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각 전문분야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것보다 더 폭넓은 분야의 업무를 가진 행정청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사가 폐지될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영역의 확대, 각종 법령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구제 방법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민원인 당사자에게 있다. 국가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행정사제도라 할지라도 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저절로 도태되고 말 것이므로 행정사 스스로 다양한 지식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법률행정서비스 시장에서 행정사의 시장성 확보 및 선점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이 선점하고 있는 전문 법률 및 행정서비스 시장에서 행정사가 갖는 강점은 소청심사, 행정심판, 토지수용, 각종 환경 분쟁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다른 전문자격사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학력 및 지적 수준 향상으로 행정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도 점차 개선되어 단순한 서류작성제출 서비스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복잡

민원의 서류작성, 인허가 등의 민원행정과 행정심판 등 구제행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전문화, 다양화로 인해 민원인 당사자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행정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그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의 업무 중 수익성이 있는 분야로 판단되는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업무의 경우 2018년 말 현재 심리건수 40,772건 대비 인용건수 14,379건으로 인용률이 35.3% 수준이며, 그중 경찰분야 사건은 심리건수 16,749건 대비 인용건수 2,681건(인용률 16%)으로 인용률이 낮은 편이고, 환경 분야 사건은 심리건수 490건 대비 인용건수 293건(인용률 59.8%)으로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⁵⁾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행정사의 시장성만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분쟁조정신청, 보훈심사, 소청심사, 행정심판 등은 시장성과 수익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므로 행정사 개인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충분히 독자적인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시 및 농어촌지역 등의 지역별 여건과 행정사 개인의 자질 및 역량 등에 따라 수임업무 분야의 차이가 많으므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젊은 세대 행정사와 행정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인 노년층 행정사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도 일정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주로 60대 이상인 행정사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지역에서 단순 민원행정에 대한 서류작성을 위주로 활동 중이며,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나 최근 개업을 한 행정사의 경우 소청심사, 행정심판, 보훈심사 등 국민의 권리구제 위주로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영업을 이루어지고 있어 젊은 층의 행정사는 개인능력에 따라 충분한 시장성 확보가 가능하여 고수익 전문직업인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변호사, 법무사와 같이 체계적이고 안정된 분야에서는 확고하게 활성화 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 시장은 소극적이고 자기계발 노력이 미흡하여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시장과 행정서비스 시장을 차별화 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행정서비스 시장은 지속적

5)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통계 자료 인용
<http://www.acrc.go.kr/acrc/index.do>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4)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

행정사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행정사는 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국민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은 물론 대민행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불편이나 민원행정처리에 대한 형식요건과 법률요건 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의 대민행정 관련 사무는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작성, 신청되어야 행정기관의 민원업무처리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만약에 일반국민이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고, 신청민원의 경우 절차적 하자로 인한 민원서류의 보완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많은 행정처리 시간이 소모되어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업무를 행정사를 통해 대행 또는 대리하는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행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

앞에서 행정사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행정사가 거기에 걸 맞는 법률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자격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종래의 행정사가 문맹시대의 대서사(代書士)라는 사회적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행정사 스스로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이에 적절한 법제도적,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사 시험면제제도를

없애고 행정사 시험을 통한 국가자격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행정사 자격도 분야별로 전문자격제로 세분화 하여 교통, 환경, 정보, 군사 및 보훈, 보건위생, 주택 및 건축, 도시계획, 해사, 번역 등 직업 영역별로 전문자격제도 또는 전문교육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교육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은 물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신규자격자에 대한 연수교육제도와 기존자격자에 대한 분야별 재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추어 능력 있고 진취적인 행정사상을 구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능한 국가공인 전문자격자로서 행정사의 위상을 높이고 행정사법에 행정사의 정의를 규정함과 아울러 주된 권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어 행정사가 “거리의 행정변호사”로서 또는 행정도우미로서 국민생활 속에 파고들어가 국민과 행정기관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국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행정사의 유형과 업무범위

행정사의 유형은 행정사법 제4조 및 행정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행정사 소관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며, 행정사법 제2조 및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범위와 주요 내용은 “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실증명 서류의 작성, ③ 행정기관 업무관련 서류 번역, ④ 행정기관에 제출할 각종 서류제출 대행, ⑤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⑥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⑦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이다.

가. 일반행정사의 업무범위 및 내용

“일반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업무로서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진정서,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서류의 행정기관 제출업무, ② 각종 협약서, 계약서, 확약서, 채권양도증서, 청구서 그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작성이나 제출업무, ③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 또는 번역한 서류의 행정기관 등에 제출업무, ④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허가, 면허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등의 대리업무, ⑤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에 따른 소청심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등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 및 자료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행정사의 업무범위 및 내용은 분야별로 다양하며, “행정안전부 2018년 말 민원처리기준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각종 법령에 따른 민원행정의 종류만도 총 5,445종⁶⁾으로 일반행정사의 업무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활동분야가 모든 행정분야에 걸쳐 있어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영역과 시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기술행정사의 업무범위 및 내용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일반행정사의 서류작성 및 서류제출 대행업무 중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로서 수산, 항만, 해난심판 관련 청구서류의 작성과 제출업무 등을 수행한다. 항만 관련 업무로서 일반선박(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의 작성·제출업무, 항만관리 및 수산관련 업무로서 이전에 관한 약정서 작성, 어업권(양식면허)과 어업허가신청서 작성및 제출대행, 어선의 건조(개조) 발주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업무 등 해운 및 선박에 관한 업무 등”이다.

6)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18년 민원처리기준표 통계자료 인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6&nttId=68291

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 및 내용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인증,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하는 국가공인 외국어 전문행정사를 말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 및 내용으로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로서 행정기관 제출 각종 서류의 번역,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업무로서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류, ②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사항, 그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③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

4. 행정사의 자격취득 및 업무신고

가. 행정사 자격취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5조에 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행정사 자격이 있으며, 행정사업을 하려면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종전규정에 따라 자격시험 면제를 받는 사람도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신고제로 운영하여 공무원 경력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는 경력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고나서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사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응시자격은 국적, 연령, 성별, 지역 등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법 제6조에 의한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공무원으로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행정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행정사가 될 수 없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사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 및 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 시험 중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행정사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으로 대체”한다.

“제1차 시험과목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모두 공통 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며, 제2차 시험은 행정사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으로 첫째, 일반행정사는 민법의 계약부분,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행정절차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사무관리규정 포함한 사무관리론, 행정심판 사례,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포함된 행정사실무법이고, 둘째, 기술행정사는 민법의 계약부분,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행정절차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사무관리규정 포함한 사무관리론,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며, 셋째,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민법의 계약부분,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행정절차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사무관리규정 포함한 사무관리론, 해당외국어”이다.

행정사법 제9조에 의하면, “행정사 시험은 경력직 공무원과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해 준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

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해 주며,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행정사 제2차 시험 면제과목으로는 일반 및 기술행정사가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이며,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민법(계약), 민간검정 해당 외국어 과목으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해당 외국어시험 쓰기시험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나.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행정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당초 업무 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행정사업무신고 대상자

행정사 업무신고 대상자는 행정사법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후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행정사 업무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정사,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 행정사 또는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행정사 등”이다. 그리고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행정사업무신고 기준 및 요건(법률요건 및 형식요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은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실무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등의 법률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고서(시행규칙 제7조 별지 8호 서식의 작성오류가 없을 것)와 첨부서류인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실무교육 수료증 1부 등의 형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사 업무신고 절차

행정사의 업무신고 세부절차는 행정사법 제10조에 의하여, “① 자격취득자 → ② 실무교육(시·도지사) → ③ 사무소 개설 → ④ 업무신고(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⑤ 결격여부 확인(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⑥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발급(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⑦ 자격취득자 교부 → ⑧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 ⑨ 행정사 영업(자격취득자) 순으로 신고하여 행정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4) 행정사 자격증 발급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배경 없는 상반신 사진(3cm x 4cm) 2장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사자격증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사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시험합격자로서 행정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행정사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행정사의 권리 및 의무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9조에 의하여 행정사 관할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또한,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행정사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제4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②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 ③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④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처리부에는 일련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그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행정사 사무소 설치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행정사 업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종전의 시장 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의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보내야 한다. 신고 전에 발생한 행정사의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등이 하여야” 한다.

“행정사가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①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②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③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첨부서류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행정사 협회 설립인가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행정사 협회는 행정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사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인가신청서에 ① 발기인(행정사)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② 정관 1부, ③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④ 임원(행정사)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⑤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사 협회의 정관에는 ①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②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③ 회의에 관한 사항,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협회에 관하여 행정사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사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증표(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 2 절 우리나라 행정사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⁷⁾⁸⁾

1. 행정사제도의 유래 및 역사

“과거의 전통과 역사, 학문을 먼저 충분히 익히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것을 알면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온고지신을 생각하면서 행정사제도에 대한 그간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행정사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국민들에게 투영된 모습과 역할, 그리고 국가자격에 도달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사의 효시는 1895년 조선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서업⁹⁾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1897년(광무원년) 「대서소규칙」이 공포되면서 대서업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대서업은 사법대서(현재의 법무사)와 행정대서(현재의 행정사)의 구별이 없었으나, 1906년(명치 39년 8월 23일) 경시청령 제52호(일본)로 제정 공포를 거쳐 대서업 규제규칙이 1919년 4월(일본 대정8년)이후부터 일본이 그 둘을 구분하여 「사법대서인법」을 시행하였고, 1920년 11월 25일(일본 대정9년) 내무부령 제40호를 경유하여 내무부령 제1209호 경보국장의 통첩으로 제정되어 1924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사법대서인법을 의용(依用)하여 「조선사법대서인령」을 조선 내에 시행하여 우리나라에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으며, 조선총독부령 제75호에 의하여 “조선 광업 대서사 규제규칙”으로 개정 변경되었는데 당시의 대서업 허가권은 “경찰서장 및 도지사에게 부여”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사는 『대서사』란 이름으로 근대국가의 생성과 연륜을 같이 해온 것으로서 당시 대서사의 역할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던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의 대서나 경찰서에 제출했던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등 단순문서의

7) 김광호, 행정사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석사논문 24~26쪽

8)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간행물 159번, 「2012행정사제도 업무편람 4~5쪽」 참조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35456

9) 사법대서와 행정대서의 유래, 인터넷 검색창 namu.wiki/w/법무사, namu.wiki/w/행정사

대필을 주된 내용으로 해 왔으며, 1894년 갑오경장으로부터 현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어 정부조직과 행정이 현대화를 지향하게 되었고, 당시 다수의 국민들이 “낫 놓고 기역(丌)자도 모른다.”는 격언과 같이 문맹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대화의 창구, 문서의 대필 등이 필요하여 그 상호교역할을 해 온 것이 기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대서업은 허가, 인가, 처분신청서, 기타 행위를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선대서사취체규칙」에 의하여 대서사(代書士)로 분리하게 되었으며, 그 뒤 이러한 일본 대서업 규제규칙(현 행정사제도) 등의 도입으로 변천하여 오면서 1961년 9월 23일 우리나라에서 『행정서사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당시 행정서사법에서 “행정서사라 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 기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서사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경력직 공무원이나 사법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의 위치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지사(허가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 대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대서규제규칙”의 모순된 점을 수정·보완할 뿐만 아니라 행정서사법에 대한 각계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75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행정서사법」의 공포실시로 행정서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부 개정된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건전한 행정서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행정서사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이를 일반·외국어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구분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에는 “사법서사도 행정서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완전한 사법서사와 행정서사가 분리되지는 않고 있었다. 행정서사는 행정서사회를 조직하여 그 회원이 되며, 내무부장관이 행정서사회를

지휘·감독하였다. 그 이후 사법서사와 행정서사가 혼용되는 과도기를 거쳐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74호로 현재의 행정사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명칭이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변경되었고, 행정사의 종류도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법무사와 행정사를 확고하게 구분하는 전문 행정사의 시대가 열려 행정사의 기원”이 되었다.

따라서, 행정사 제도는 1961.9.23 행정서사법 제정(법률 제727호)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그 동안 12차례의 법률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1. 9.23 제도도입 당시에는 『행정서사』라 명하고, 동 행정서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1975.12.31 행정사법 전부 개정 시에는 행정서사를 일반·외국어 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분류 하였고, 1995. 1. 5 행정사법 전부 개정 시에는 “행정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국민들이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기술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세분화 하고,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에는 대한행정사 산하 지방행정사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다.

1999. 5. 24 전부 개정 시에는 행정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정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사법 조문을 총 38개에서 16개로 축소하고 대한행정사회와 지방행정사회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행정사업에 대한 대한행정사회 등록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로 변경하여 국민에 대한 행정사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행정사업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였으나, 사실상 행정사에 대한 체계화와 전문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퇴보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9년 9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2년 1월부터 행정사법과 행정사제도의 폐지를 결의하게 되었으며,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행정서사제도에서 행정사제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법 제정 5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행정사제도의 폐지를 논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시대와 역사를 외면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편익과 권익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세와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 입법부와 행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드러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9. 7. 16일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법을 폐지하여 2002. 1. 1부터 행정사업을 자유업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었으나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이 폐지되면 행정사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져 행정사의 업무 대부분이 변호사법 저촉으로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변호사 등 타 자격사가 이를 수행할 경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행정사의 난립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정사법의 존치로 인한 순기능과 폐지 시 부작용 등을 심층 검토하여 행정사법의 폐지보다는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행정자치부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 행정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 행정사에 대한 전문 교육 훈련시스템 구축, 행정사 업무범위의 명확화, 행정사 관련 협회설립 근거 등 행정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2. 11. 1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행정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과 전문자격사 및 사업자 단체 규제개혁기본방침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정사제도의 존치를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사법 폐지를 논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사법 및 제도의 회생존치를 열망하는 대한행정사회 전국 회원들의 논쟁과 공방 속에서 2000년 5월부터 2년여에 걸친 정부투쟁 끝에 2001년 11월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10여 차례 재심회의를 통하여 행정사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행정사법의 회생 및 존치를 확정하기에 이르렀으며, 2004년 9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행정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사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제도를 다시 복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이 와중에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

하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헌재 2010. 4. 29. 2007헌마910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청구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과거 행정사 자격시험은 퇴직 공무원들이 독점해 왔으나 2010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2013년부터 일반인도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2011. 3. 8 행정사법 전부 개정 시에는 행정사자격시험 면제제도 개선, 시험관리업무 위탁,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등 2013년부터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행정사협회, 행정사교육 등 전반적인 행정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대폭적인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더욱 진화된 법률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사의 대리제도, 행정사 교육, 행정사에 대한 인식개선, 행정사의 활성화 방안 등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사제도는 시대의 변화속에 우여곡절과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게 변화·발전해 왔으며, 국민들이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각종 민원의 복잡한 절차와 바쁜 일상생활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사법의 목적에 맞게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행정사법 제정 및 개정 연혁

우리나라 행정사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총 18차례 개정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 및 입법 취지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 연도별 행정사법 개정 현황

연도별분	구 분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법률번호
1961.9.23 (공포·시행)	행정서사법 법률제정	- 행정서사 허가제 실시 - 행정서사의 자격과 위촉의 거부금지, 사실의 누설금지 등 의무사항 정함. - 1938년 총령 제78호 「조선대서사규제규칙」, 1941년 총령제75호 「조선광업대서사규제규칙」 폐지	법률 제727호
1963.3.5. (공포·시행)	제1차 개정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 일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법률 제1288호
1975.12.31 (1976.1.31 시행)	제2차 개정 (전부개정)	- 행정서사의 종류를 일반외국어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구분, 자격기준, 결격사유도 신설함. - 행정서사 관할 도지사의 허가 - 행정사업을 행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그 사무소가 설치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함.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 조례로 시·구별로 행정서사의 정원을 정함. - 행정서사회(*법인) 설립근거를 신설함.	법률 제2805호
1981.4.13 (1981.5.14 시행)	제3차 개정 (타법개정)	- 행정서사가 사망한 경우 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인허가 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서사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	법률 제3441호
1995.1.5 (1995.2.5 시행)	제4차 개정 (전부개정)	- 국민들이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 수요를 충족토록 “행정서사”를 “행정사”로 명칭을 변경, - 행정사의 업무 세분화, 합동행정사 사무소 제도 도입 - 대한행정사회의 기능과 역할 보완. - 행정사 종류를 일반기술,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 - 행정사의 자격시험을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 - 행정사의 등록은 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신청 - 등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무소 설치 업무개시 - 3인 이상의 행정사 합동행정사사무소 제도 도입	법률 제4874호
1996.12.30 (1997.4.1. 시행)	제5차 개정 (일부개정)	- 내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출입 검사권 및 대한행정사회 지부·지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행정사사무소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함. - 대한행정사회 지부·지회의 지도·검사권을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함.	법률 제5199호

1997.4.24. (위헌결정)		- 행정사법 제35조제1항 제1호의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행정사의 업무겸직금지 규정)	
1997.12.13 (1998.1.1시행)	제6차 개정 (타법개정)	- 행정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 실시 근거 마련	법률 제5453호
1999.2.5 (공포·시행)	제7차 개정 (타법개정)	- 행정사법 제12조제6호·제19조 및 제35조제2항 제1호를 각각 삭제(위촉인으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벌칙, 수수료 규정)	법률 제5815호
1999.5.24 (공포·시행)	제8차 개정 (전부개정)	- 행정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완화하여 국민에 대한 행정사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행정사업의 발전과 자율성을 높임. - 행정사시험 면제대상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15년 이상 근무자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 -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등록제 폐지 -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행정사업 등록제 → 신고제로 변경) - 행정사업무 수수료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얻어 대한행정사회가 정하는 제도폐지 - 행정사의 업무처리부 비차기재의무와 사무소의 이전 등 각종 신고의무 폐지 - 공무원의 행정사 사무소 출입검사제도 폐지함	법률 제5984호
2005.3.31 (2006.4.1시행)	제9차 개정 (타법개정)	- 행정사법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 받은 자”로 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	법률 제7428호
2008.2.29 (공포·시행)	제10차 개정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법률 제8852호
2008.12.16 (공포·시행)	제11차 개정 (일부개정)	- 행정사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	법률 제9212호
2010.4.29. (위헌결정)		-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자격시험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근거 제시)	

2011.3.8 (2013.1.1 시행)	제12차 개정 (전부개정)	-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사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 협회설립 개선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제도 개선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일부면제와 전부면제 구분 - 시험전부면제는 폐지 - 유능한 인제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행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10441호
2013.3.23 (공포·시행)	제13차 개정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	법률 제11690호
2014.11.19. (공포·시행)	제14차 개정 (타법개정)	-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법률 제12844호
2015.5.18 (공포·시행)	제15차 개정 (일부개정)	- 법 제9조 시험의 면제 규정중 제 3항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험면제 적용 배제(신설)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 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법률 제13296호
2016.1.27 (공포·시행)	제16차 개정 (일부개정)	- 법 제6조 제1호 용어의 변경(금지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법 제36조의 벌칙 제1항 및 제2항의 변경 -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 - 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	법률 제13835호
2016.12.02 (공포·시행)	제17차 개정 (일부개정)	- 시험면제 항목 추가 - 법 제9조 시험의 면제 항목 - “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신설)”	법률 제14287호
2017.7.26. (공포·시행)	제18차 개정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법률 제14839호

출처: 행정안전부(2012: 5-17)

3. 행정사 자격 변천사

우리나라 행정사 자격 제도 또한 지난 1961년 법 제정 이후 다섯 차례 자격 요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자격제도는 지난 2013년 부터 시행되었다.

[표 2-2] 연도별 행정사 자격제도 현황

연 월 일	행정사 자격	자격의 종류 및 명칭
1961. 9.23 ~ 1976. 1.30	- 허가관청(서울특별시시장 또는 도지사)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하였거나 4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지방공무원으로서 4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3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부칙 제3항 : 본법 시행 전 구법령에 의하여 대서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건축, 광업, 토지측량 또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의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해당과목에 관하여 실업고등학교 졸업정도를 표준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해야함. 단, 건축, 광업, 토지측량 또는 해사를 전공으로 하는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의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① 행정서사 ② 사법서사 ③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
1976. 1.31 ~ 1995. 2.4	<일반행정서사> - 서울특별시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시행하는 일반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외국어번역에 관한 행정서사> - 도지사가 시행하는 외국어번역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 초급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 - 도지사가 시행하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해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일반행정서사 ② 외국어 번역행정서사 ③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

1995. 2.5 ~ 1999. 5.23	※ 1995.2.5.일 행정서사법을 행정사법으로 전면개정하고, 행정서사를 행정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행정사의 종류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3종류로 구분함. 1. 내무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의 전부면제 대상 >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5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7년 이상 5급 이상 직에 근무한 자 다. 대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당해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칙 제2조(행정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업무 분야에 따라 각각 이 법에 의한 일반·기술·외국어번역에 관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일반행정사 ② 기술행정사 ③ 외국어 번역행정사
1999. 5.24 ~ 2012. 12.31	1.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행정사자격시험의 전부면제자 >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일반행정사 ② 기술행정사 ③ 외국어 번역행정사
2013. 1.1 ~ 2019.11.31 현재	1.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음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 한 사람과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종전규정에 의한 시험의 전부면제>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나.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일반행정사 ② 기술행정사 ③ 외국어 번역행정사

출처: 행정안전부(2012: 18-20)

제3절 행정사제도의 운영현황

1. 행정사 자격취득자 현황 분석

행정사제도 및 행정사 관리에 대한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사 자격은 공무원 경력 행정사(시험면제 행정사)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행정사(자격시험 행정사)로 구분하며, 행정사는 소관 업무분야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 연도별 행정사 자격취득자 현황 분석

2018년 12월 31일 현재 행정안전부 행정사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표 2-3], [그림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53,725명으로 일반행정사 349,995명(99%), 기술행정사 3,207명(0.9%), 외국어번역행정사 523명(0.1%)순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일반행정사 수가 총 행정사 중 9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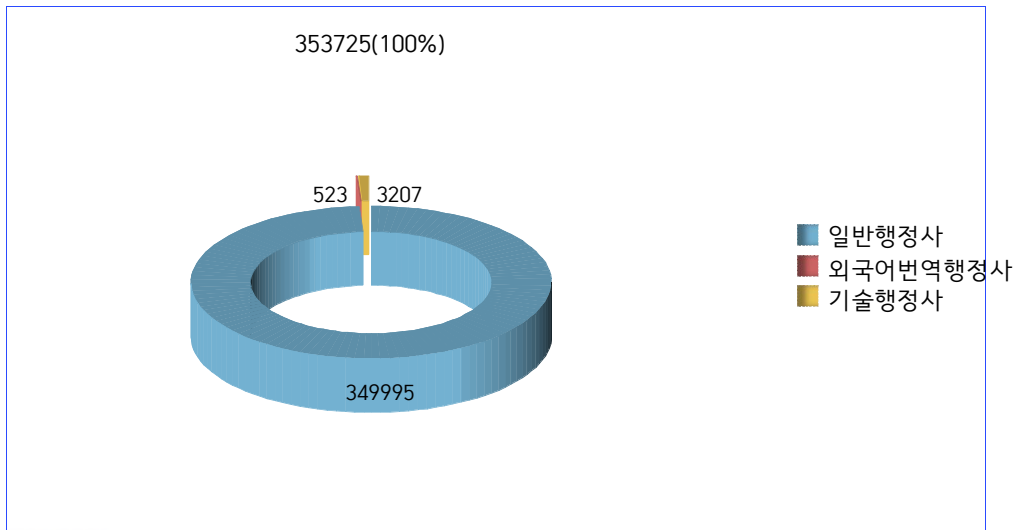
[그림 2-2]와 같이 행정사에 대한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행정사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급격하게 증가를 보였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폭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행정사 시험 합격자 수가 매년 큰 변동성이 없는 것을 보면 2011년 3월 8일 이후부터는 공무원의 시험 전부면제 제도가 폐지되었고, 그 이전의 경력직공무원 중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거나 자격증 취득자의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2-3] 연도별 행정사 자격취득자 현황(시험 면제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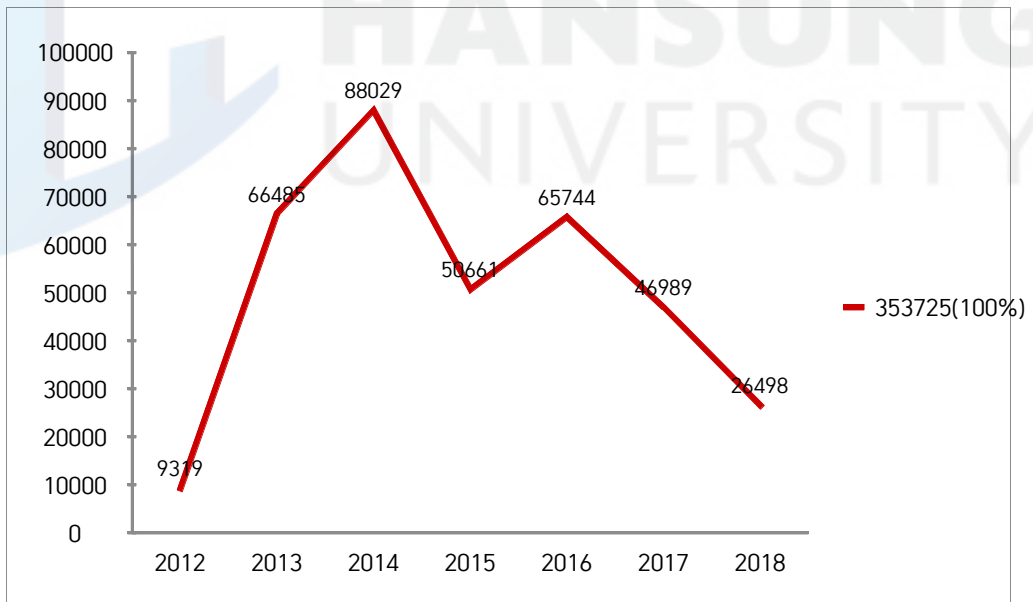
(2018.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353,725(100%)	349,995(99%)	523(0.1%)	3,207(0.9%)
2012	9,319	9,205	103	11
2013	66,485	66,418	43	24
2014	88,029	87,737	74	218
2015	50,661	50,166	66	429
2016	65,744	65,065	77	602
2017	46,989	46,068	77	844
2018	26,498	25,336	83	1,079

출처: 행정안전부(2019)



[그림 2-1] 행정사 종류별 자격취득자 현황(시험면제자 포함)
출처: 행정안전부(2019)



[그림 2-2] 연도별 행정사 자격취득자 현황 추이(시험 면제자 포함)
출처: 행정안전부(2019)

나. 시험시행 회수별 행정사 자격취득 현황 분석

행정사 시험은“2010년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행정사의 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어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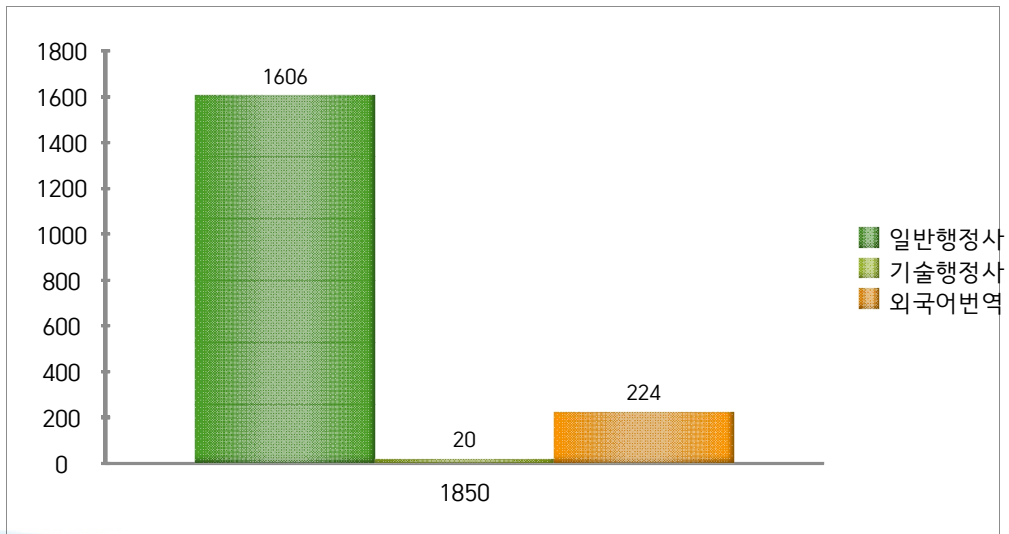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1회부터 제6회까지 행정사 합격자별 현황을 보면 총 합격자 수는 1,850명으로 이중 일반행정사 1,606명(87%), 외국어번역 행정사 224명(12%), 기술행정사 20명(1%) 순으로 행정사시험 선발 인원수도 일반행정사 수가 1,606명으로 총 행정사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행정사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시험 회수별로는 제1회 296명, 제2회 330명, 제3회 330명, 제4회 330명, 제5회 311명, 제6회 253명으로 [표2-4]와 같으며, 2013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부터 연도별로 시험합격자 수의 큰 변동은 없으나 2018년에는 합격자수가 253명으로 전년도 비해 58명이 감소하였다.

[표 2-4] 시험시행 회수별 행정사 자격취득자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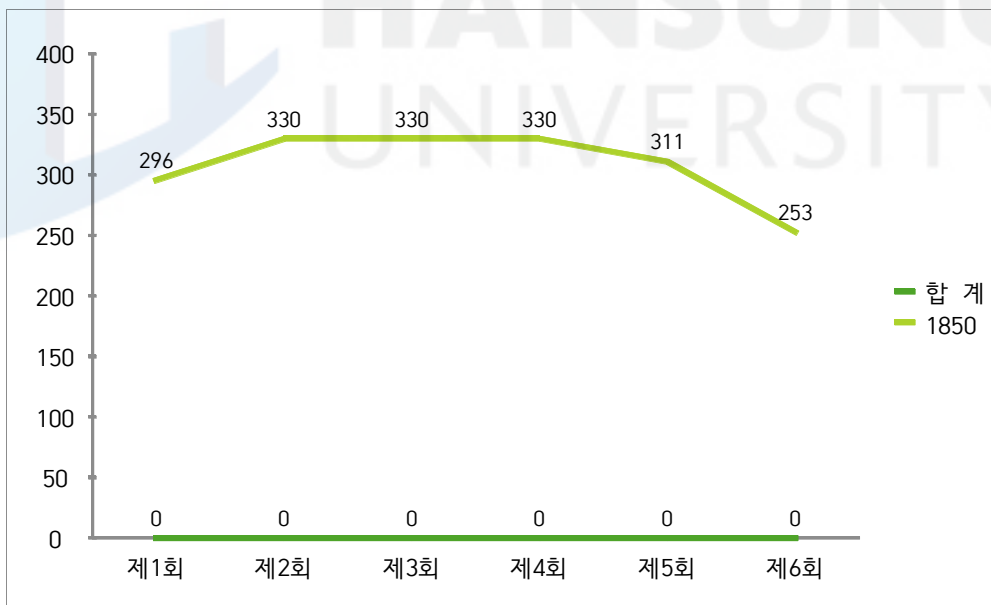
회수별	연도별	계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 계		1,850 (100%)	1,606 (87%)	20 (1%)	224 (12%)
제1회	2013년	296	269	3	24
제2회	2014년	330	287	3	40
제3회	2015년	330	287	3	40
제4회	2016년	330	287	3	40
제5회	2017년	311	266	5	40
제6회	2018년	253	210	3	40

출처: 행정안전부(2019)



[그림 2-3] 행정사 종류별 시험시행 자격취득자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19)



[그림 2-4] 시험시행 회수별 행정사 자격취득 현황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2019)

2. 행정사업 신고 및 영업현황 분석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1999년 5월 4일 이전까지는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1999년 5월 4일(행정사법 전면 개정) 이후부터는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행정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가. 최근 5년간 행정사업 운영현황 분석

[표 2-5]와 같이 최근 5년간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고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총 행정사 자격취득자 353,725명 중 8,789명으로 약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중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총 8,214명이고 휴업중인 행정사는 575명으로 년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하여 3년간 영업신고 행정사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2014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최근 5년간 영업 행정사는 줄고 휴업 행정사는 늘어하는 현상을 보여 행정사업이 국내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이 미치기도 하겠지만 아직도 행정사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는데 더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행정사가 영업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사 중에는 현재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행정사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행정사업종도 타 업종과 같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행정사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행정사 영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집에서 잠자고 있는 34만여 행정사 자격자들을 최대한 행정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함께 행정사 교육제도를 강화하여 자질과 역량이 뛰어난 행정사의 배출과 국민생활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며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사가 “거리의 민생변호사” 또는 “국민의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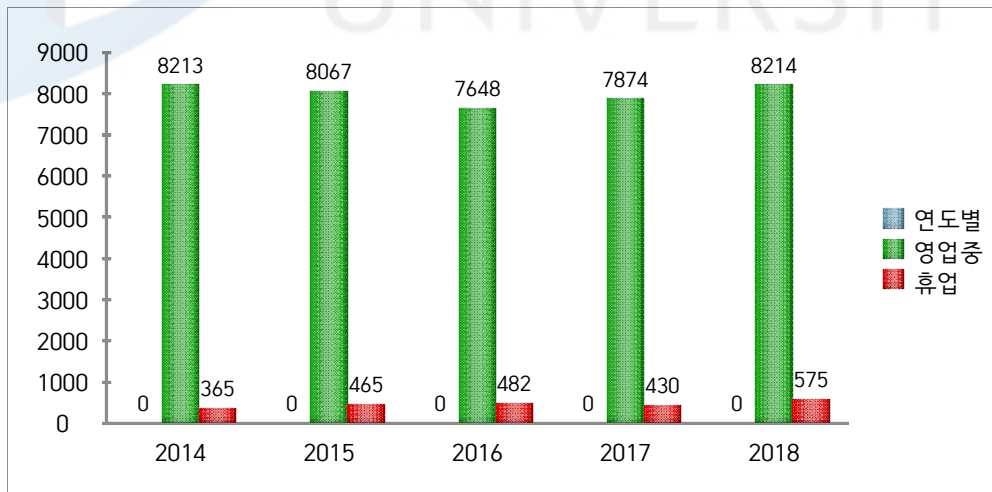
도우미”에 걸 맞는 역할을 통해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침해 최소화과 권익보호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2-5] 연도별 행정사업 신고 및 영업현황(최근 5년간 운영실태)

(2018.12.31. 현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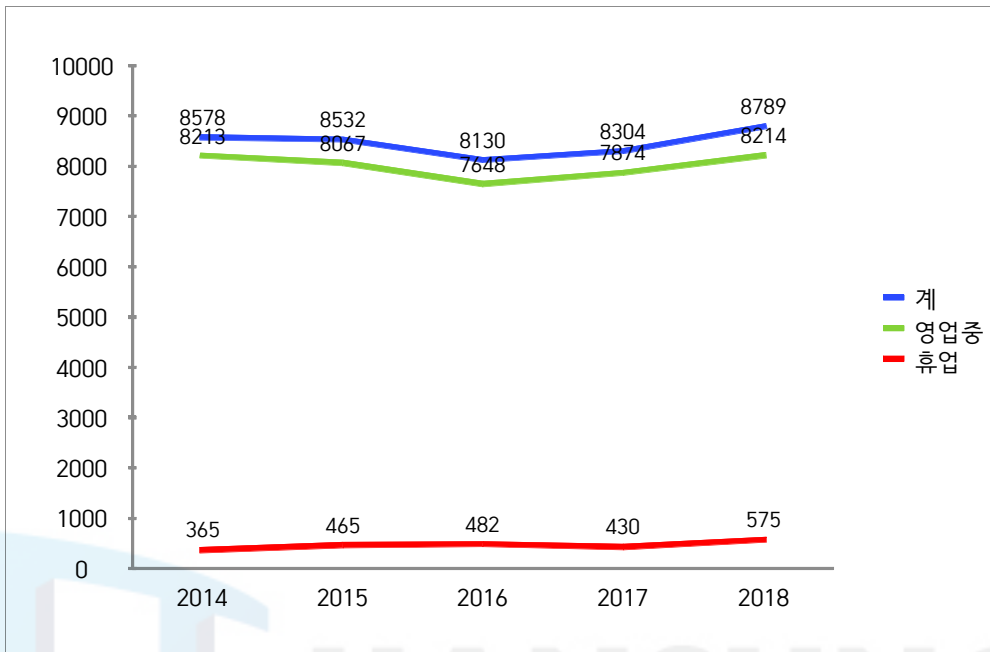
연 도 별	계 (A=B+C)	영업중 (B)	휴업 (C)	비고
2014	8,578	8,213	365	※ 합동행정사 사무소 포함
2015	8,532	8,067	465	
2016	8,130	7,648	482	
2017	8,304	7,874	430	
2018	8,789	8,214	575	

출처: 행정안전부(2019)



[그림 2-5] 최근 5년간 행정사 영업 및 휴업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19)



[그림 2-6] 최근 5년간 행정사 영업 및 휴업 실태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2019)

나. 최근 5년간 행정사업 경력별 현황 분석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표 2-6]과 같이 2018년 12월 31일 현재 행정사 영업 경력별 실태를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자가 3,399명으로 가장 많아 총 영업신고자 (8,789명)의 38.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1,992명(22.7%)이며,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행정사는 572명으로 가장 적으며, 총 영업신고자의 6.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 행정사 경력별 실태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경력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 경력자가 계속 영업을 하여 2017년부터 2018년도에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자가 5년 미만의 경력자를 반전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10년 이상 경력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18년 12월 말 현재는 10년 미만 경력자가 6,217명으로 총 영업자 수

8,789명의 70.7%를 차지하고 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행정사는 2,572명으로 전체 영업자 수의 29.3% 밖에 되지 않는다. 경력별 행정사 현황에 대한 변화 추이를 보면 1년 미만 경력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자, 20년 이상의 경력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1년 이상 5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부터 행정사 시험제도가 본격 실시되면서 매년 300여명 이상 신규 행정사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10년 미만 경력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20년 이상 경력자도 그간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행정사 영업 진입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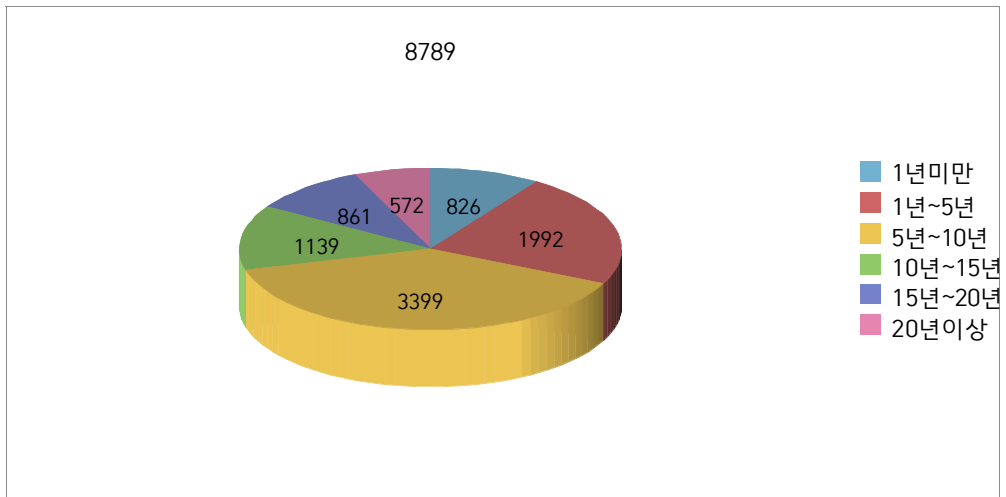
그러나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력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마도 1999년 9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2년 1월부터 행정사법과 행정사제도의 폐지를 결의하게 된 시기와 2013년 행정사 시험제도 최초 시행시기의 과도기적 시대를 맞으면서 행정사제도의 큰 위기와 대 혼란기를 거치게 되어 대체로 행정사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없어지고 행정사 시장진입이 어려워 영업자 수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6] 영업 행정사 경력별 현황(최근 5년간 운영실태)

(2018.12.31. 현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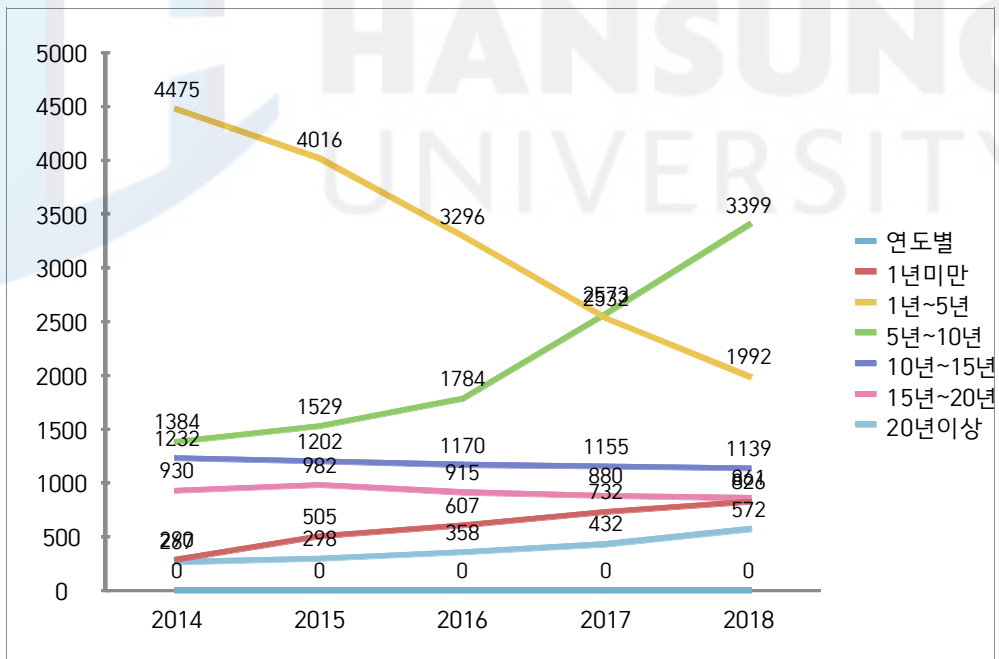
연도별	계	1년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이상
2014	8,578	290	4,475	1,384	1,232	930	267
2015	8,532	505	4,016	1,529	1,202	982	298
2016	8,130	607	3,296	1,784	1,170	915	358
2017	8,304	732	2,532	2,573	1,155	880	432
2018	8,789	826	1,992	3,399	1,139	861	572

출처: 행정안전부(2019)



[그림 2-7] 영업 행정사 경력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19)



[그림 2-8] 최근 5년간 영업 행정사 경력별 현황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2019)

다. 시·도별 행정사업의 종류 및 영업 상황별 현황 분석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는 총 8,789명으로 [표 2-7]과 같이 전국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2,71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순으로 경기도가 2,105명이며, 세종특별자치시가 43명으로 가장 적다. 나머지 시도는 80명이상 480명이하이다. 종류별로는 일반행정사 8,376명(95.3%), 기술행정사 39명(0.4%), 외국어번역행정사 200명(2.3%), 합동사무소 174명(2%)이며, 영업 상황별로는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영업 중인 행정사가 총 8,214명으로 서울특별시가 2,608명, 경기도가 1,918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41명으로 가장 적다. 휴업중인 행정사는 총 575명으로 경기도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순으로 서울특별시가 107명이며, 세종특별자치시가 2명으로 가장 적다.

[표 2-7] 시·도별 행정사업 현황(행정사 종류별, 영업상황별)

(2018.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종류별					영업상황별		
	계	일반	기술	외국어	합동 사무소	계	영업중	휴업
합 계	8,789	8,376	39	200	174	8,789	8,214	575
서울특별시	2,715	2,537	6	98	74	2,715	2,608	107
부산광역시	479	435	9	21	14	479	419	60
대구광역시	365	353		9	3	365	350	15
인천광역시	360	349	3	4	4	360	345	15
광주광역시	229	218	1	5	5	229	210	19
대전광역시	237	217	1	6	13	237	215	22
울산광역시	123	122	1			123	119	4
세종특별자치시	43	40			3	43	41	2

경기도	2,105	2,021	3	37	44	2,105	1918	187
강원도	245	243	1	1		245	227	18
충청북도	194	192		2		194	173	21
충청남도	276	268	8			276	257	19
전라북도	355	347		8		355	347	8
전라남도	229	221	3	3	2	229	215	14
경상북도	304	300	1	1	2	304	264	40
경상남도	442	424	3	5	10	442	421	21
제주특별자치도	88	83	5	—	—	88	85	3

출처: 행정안전부(2019)

라. 시·도별 행정사업의 경력 및 연령별 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행정업무와 관련한 인허가의 난맥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사제도의 활성화는 행정권의 다양한 권한을 단일창구로 일원화함으로써 일반국민의 행정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행정사의 업무범위, 자격, 지위 등을 고찰해 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영업실태에 대하여 경력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우리나라 전국의 행정사 업무신고자 8,789명 중 경력별 현황을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행정사가 3,399명(38.7%)으로 가장 많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1,992명(22.7%)으로 다음 순이며, 20년 이상인 행정사가 572명으로 가장 적다. 전국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가 1,18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854명으로 그 다음 순이며, 세종특별자치시가 5년 이상 10년 미만 12명으로 가장 적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40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70대 이상으로 2,256명이며, 30대 미만이 257명으로 가장 적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행정사제도가 무시험 전부면제 공무원 경력자 위주의 자격제도로 운영해 오다가 2013년부터 행정사 시험제도가 실시되어 젊은 층이 적고 고령자 노년층이 많은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8,789명의 행정사 중에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행정사가 5,659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하 젊은 층의 행정사는 총 3,130명으로 36%의 분포를 이루고 있어 60대 이상 행정사가 50대미만 행정사보다 2,529명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60대 이상 노령 층의 행정사가 많은 이유는 경력 공무원 행정사가 시험합격 신규 행정사보다 많다는 것이고, 경력행정사는 퇴직공무원 출신으로서 행정전문가답게 고난도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경력 행정사는 퇴직 후의 노후대책을 위한 부업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취약한 반면 50대 이하 젊은 층의 행정사는 높은 경쟁력을 뚫고 합격한 자질과 역량이 뛰어난 전문행정사로서 각종 인허가 업무, 토지보상업무, 보존업무, 토지형질변경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과 고소득을 지향하는 고난도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활편익과 권익보호 등의 행정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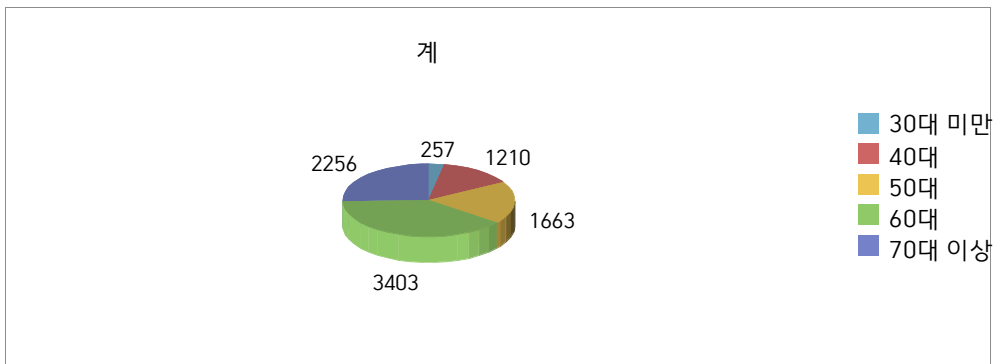
행정사제도의 역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과 같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국민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주로 대서 위주의 업무수행만으로 이해하고 있어 행정사에 대한 인식이 타 자격사보다 저평가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의 인식전환과 행정사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사의 자질 향상과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행정사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사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사의 실무교육 강화는 물론 전문행정이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2-8] 시·도별 행정사업 현황(경력별, 연령별)

(2018.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경력별							연령별				
	계	1년 미만	1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이상	30대 미만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8,789	826	1,992	3,399	1,139	861	572	257	1,210	1,663	3,403	2,256
서울특별시	2,715	255	691	1,183	292	147	147	93	388	491	1,000	743
부산광역시	479	35	91	181	78	59	35	8	51	60	217	143
대구광역시	365	33	83	101	59	47	42	28	49	63	128	97
인천광역시	360	21	94	159	45	32	9	17	65	83	141	54
광주광역시	229	32	48	68	43	33	5	14	53	44	67	51
대전광역시	237	21	43	111	28	29	5	9	29	47	91	61
울산광역시	123	7	21	59	14	11	11	1	6	22	66	28
세종특별자치시	43	10	9	12	2	5	5	3	4	7	13	16
경기도	2,105	211	479	854	272	209	80	50	351	464	828	412
강원도	245	10	49	87	46	27	26	3	25	57	105	55
충청북도	194	29	44	72	19	20	10	2	25	35	93	39
충청남도	276	25	53	111	31	35	21	2	24	64	121	65
전라북도	355	22	63	85	66	65	54	5	40	41	105	164
전라남도	229	23	46	68	43	29	20	1	21	36	95	76
경상북도	304	25	65	72	47	44	51	5	32	57	100	110
경상남도	442	50	99	134	49	62	48	13	37	68	198	126
제주특별자치도	88	17	14	42	5	7	3	3	10	24	35	16

출처: 행정안전부(2019)



[그림 2-9] 행정사업 연령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19)

제 3 장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행정사제도에 있어서 행정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실무경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아무리 행정사 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행정사 역할과 업무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업무 등 민원행정과 행정심판 등 국민의 권리침해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행정절차나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적 관계 등을 잘 살펴서 논리적 정의와 합리적 판단으로 잘 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논거를 제시하고 해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육제도나 교육프로그램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사에 대한 교육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교육프로그램은 잘 운용되어 행정사들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 만족하는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향후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지 등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유사 전문자격사에 대한 정착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행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등의 발전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행정사 교육제도의 개요

1. 행정사 교육의 법적근거

행정사교육제도의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의 종류는 크게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실무교육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며, 연수교육은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행정사나 대학교 행정학과 및 법학과 등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과목·시기·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행정사 교육의 필요성

앞에서 행정사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반행정사의 업무범위 및 내용은 분야별로 다양하며, 행정안전부 2018년 말 민원처리기준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각종 법령에 따른 민원행정의 종류만도 총 5,445종으로 일반행정사의 업무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활동분야가 모든 행정분야에 걸쳐 있어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영역과 시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사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행정사의 실무교육의 부실성과 연수를 통한 전문행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행정사제도가 공인자격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실생활 속에서 행정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사에 대한 전문성과 일반국민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사제도의 시발점이 경력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시험 자격제도로 일관해 오다가 2013년부터 행정사 시험제도가 최초 시행되어 금년도에 7회를 배출하고 있지만 2018년 현재 시험합격자 행정사는 총 1,850명뿐이어서 행정사의 세대교체가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재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8,789명중 60대 이상이 5,659명(64.4%)으로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행정사업을 활기차고 왕성하게 할 행정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행정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행정사제도의 불안정적인 바탕위에서 행정사 노령화로 취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은 물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수교육조차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급변하고 있는 행정시대에 걸 맞는 기본소양은 물론 행정사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 행정사를 확보할 수 없고, 국민에게는 과거 대서사 역할을 해오던 기억만 남아 있어서 행정사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행정사 자격제도의 폐지론까지 나오게 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고려하여 행정사의 역할, 행정사가 하는 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각 분야별 행정업무 이론과 실무, 갈등관리,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조사방법 등 행정전문가로서 지식을 갖추고 국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민원행정업무 처리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국민을 권리침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일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행정사의 교육방법 및 교육기관

교육의 종류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으로 나눈다.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 교육으로 구분하며,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고,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에 위임)은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교육과목, 교육의 이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사 협회나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의 개설된 대학) 등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서울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사 자격취득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사 업무신고를 할 수 없으며,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행정사 연수교육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사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행정사나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도가 개설된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행정사 교육제도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연수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만 있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이나 강사진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 이어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행정사에게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의 시행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실효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제도는 있으나 이를 운영할 조직체계와 예산지원 등이 없어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의견을 제시하듯이 실질적으로 행정사에 대한 전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 2 절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1.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요

행정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에 대한 교육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으로 구분하며, 실무교육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며, 연수교육은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행정사나 대학교 행정학과 및 법학과 등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사법에 행정사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사제도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행정사 협회가 7개로 나뉘어져 난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교육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행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사에 대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행정사협회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행정사가 자율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란 쉽지 않고 전문교육을 받은 분야별 유능한 강사진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양성을 위한 어떤 형태의 교육이라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행정사에 대한 실무교육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육실시 60일전에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각 협회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확보하여 행정사법에서 정한 총 60시간(기본소양교육 20시간, 실무수습교육 40시간)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회별로 교육프로그램, 교육장소, 강사진 확보 등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현재 각 행정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7개 행정사 중 교육장소, 강사진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와 기술행정사협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장소, 강사진을 확보한 대한행정사협회, 한국일반행정사협회, 한국행정사업협회, 공인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 등 5개 행정사 협회를 대상으로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2. 행정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태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5개 행정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사해 본 결과 모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행정사교육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행정사가 실무교육을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사 교육 일정은 <표 4-1>과 같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연간 10회 이상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경기 지역 등 지정된 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일정, 교육 수강료 등은 5개 행정사가 공히 유사하며, 교육 강사 및 교육 장소는 행정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실무교육 운영방식은 <표4-2>와 <표4-3>과 같이 기본소양 교육과정 (3일 20시간)과 실무수습교육과정(5일 40시간)으로 나누어 이론과 실무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교육내용과 장소는 협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연수교육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공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행정사협회와 공인행정사 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연수교육 접수창구를 확보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교육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제 3 절 유사 전문자격사와의 교육프로그램 비교분석

1.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분석(5개 일반행정사 협회 비교)

5개 행정사를 대상으로 [표3-1]과 같이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하여 교육신청방법, 교육일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목, 법정교육시간 준수, 교육장소, 교육 강사, 교육수강료, 교육정원, 연수교육 유무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① 교육신청은 5개 행정사 협회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 행정사 교육신청 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② 교육일정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1회 연간 10회 이상(전국행정사협회는 월2회 20회 실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5개 행정사가 모두 실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수 교육프로그램은 한국행정사협회와 공인행정사협회만 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④ 교육과목은 대한행정사협회, 공인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가 일반 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를 대상으로 10과목의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일반행정사협회와 한국행정사협회는 일반행정사만을 대상으로 기본소양교육 9과목, 실무수습교육 5~7과목을 교육하고 있어 행정사별로 각각 교육의 규모가 조금씩 달랐으며, 교육내용은 5개 행정사가 유사하며, 크게 민원행정분야와 구제행정 분야로 나누어 민원 행정분야는 인허가업무, 자동차등록업무, 출입국관리업무, 국가보훈업무, 부동산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 계약 및 민원행정 실무 등이며, 구제행정은 행정심판, 운전면허 구제, 교통사고 사실조사 등을 위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⑤ 법정교육시간 60시간(기본소양교육 20시간, 실무수습교육 40시간)은 5개 행정사 모두 준수하고 있다. ⑥ 교육 장소는 대한행정사 협회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하여 총 20개의 교육장소를 확보하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한국일반행정사협회와 한국행정사협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17개 교육 장소를 확보하고 있고, 전국행정사협회는 서울 16개소, 지방 4개소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공인행정사협회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대표지역 7개소를 교육장소로 확보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⑦ 교육 강사는 실무행정사가 주류를 이루며, 대한행정사협회는 62명의 강사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국행정사협회 26명, 공인행정사협회 20명, 한국일반 행정사협회 및 한국행정사협회는 각각 14명의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⑧ 교육수강료는 5개 행정사 모두 30만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⑨ 강의실별 교육정원은 대한행정사협회 서울교육장이 100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서울경기 교육장이 70명~90명으로 다음 순이며, 나머지는

3개 행정사는 모두 30명~50명 정도의 수준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⑩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은 한국행정사협회와 공인행정사협회가 인터넷 교육신청 창구를 개설해 놓았지만 실제로 동영상 강의를 수행하고 있는 협회는 공인행정사협회가 사설학원인 법학원과 연계하여 동영상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강의 창구를 개방해 놓고 있다.

[표 3-1] 일반행정사협회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표

협회명		대한행정사	한국 일반행정사	한국행정사	공인행정사	전국행정사
교육신청 방 법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교육일정		연10회(월1회)	연10회(월1회)	연10회(월1회)	연10회(월1회)	연20회(월2회)
매년 3월~ 12월(10개월)						
교육 프로그램	실무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연수	미 운영	미 운영	운영	운영	미 운영
교 육 과 목	기본 소양	10과목 (일반, 외국어 번역, 기술)	9과목 (일반행정사)	9과목 (일반행정사)	10과목 (일반, 외국어 번역, 기술)	10과목 (일반, 외국어 번역, 기술)
	실무 수습	10과목 (일반, 외국어 번역, 기술)	7과목 (일반행정사)	5과목 (일반행정사)	10과목 (일반, 외국어 번역, 기술)	10과목 (일반, 외국어 번역, 기술)
법 정 교육시간		60시간 (기본소양20, 실무수습40)	60시간 (기본소양20, 실무수습40)	60시간 (기본소양20, 실무수습40)	60시간 (기본소양20, 실무수습40)	60시간 (기본소양20, 실무수습40)
교육장소		전국 20개소 (집합교육)	전국 17개소 (집합교육)	전국 17개소 (집합교육)	전국 7개소 (집합교육)	서울 16개소 지방 4개소 (집합교육)
교육 강사		62명	14명	14명	20명	26명
교육수강료		30	30	30	30	30
1회 교육정원		서울100명 지방 50명	서울 70명 경기지역 90명 지방 50명	30명	30명	30
역량강화 연수교육		없음	없음	없음	사설법학원 연계 19개 동영상 강의 기능)	없음
협 회 창립연도		1976.8.10	2013.7.17	2014.7.8	2014.7.22	2015.9.
홈페이지주소		http://www.kapal.or.kr/	(http://www.kaaoga.or.kr)	www.kafpa.or.kr/	http://www.aapak.org/	http://www.naa77.co.kr/sub01

2. 유사 전문자격사 교육프로그램 분석(6개 유사 자격사 비교)

가. 유사 전문자격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유사 전문자격사인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의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1) 변호사의 교육프로그램(대한변호사협회, www.koreanbar.or.kr)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도 무조건 변호사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고 본인이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개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법조윤리과목 포함)을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2회(2월, 8월)의 일반연수와 수회의 특별 연수를 전체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하여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학이론 및 실무지식, 변호사제도, 직업윤리, 정치, 경제 등 관련 과목, 기타 필요한 교양과목 등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수료하게 함으로써 꾸준히 그 자질을 향상시키고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교육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자가 단독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사전에 6개월 이상 연수를 하도록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회원의 실력배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7년 3월 17일 "변호사연수원"을 설립하여 수강신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특별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 연수는 변호사들이 최신 법률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인격을 도야하고 상호협조의 정신과 연대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등 법조인의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전문분야 특별연수는 매년 적절한 시기에 전문분야의 실무 및 이론에 관하여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등 교육장을 찾기 어려운 변호사들을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온라인연수원'을 통해서 의무연수시간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연수교육 안내 및 신청 창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변리사의 교육프로그램(대한변리사회, www.kpaa.or.kr)

“대한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을 육성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변리사단체로서 다양한 세미나, 연수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15조에 의하여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직업윤리과목 2시간 포함)을 2년에 24시간이상을 받아야 한다. 변리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연수교육을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연수교육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영상 강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3) 공인회계사의 교육프로그램(한국공인회계사회, www.kicpa.or.kr)

“공인회계사법 제46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회원 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

연수원을 두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실무수습교육을 1년 이상 받아야 하며,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수교육 및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은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나 사이버 회계연수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4) 법무사의 교육프로그램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kjaar.kabl.kr)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9조에 의하여 법무사법 소정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무에 관한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 연수는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연수교육기간은 법무사 자격인정 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 연 4회,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월 이내에 3주 이상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협회는 연수교육을 마친 자에게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 후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연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인노무사의 교육프로그램(공인노무사협회, www.kcplaa.or.kr)

“공인노무사 교육은 연수교육과 보수교육의 2종류가 있다. 연수교육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기 전에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직무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연수교육기관은 공인노무사회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등이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한 전문교육과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윤리교육으로 구분하며,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을 매년 8시간을 받아야 한다.”

6) 세무사의 교육프로그램(한국세무사회, www.kacpta.or.kr)

“세무사 교육은 실무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며, 실무교육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 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기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며,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세무사회에는 세무연수원 동영상 강의도 개설되어 있다.”

나. 유사 전문자격사의 교육프로그램 비교

[표 3-2]와 같이 6개 유사 전문자격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행정사 협회보다 유사 전문자격사 관련 협회가 주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자격사 등록기관은 변호사와 법무사만 협회에 등록해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는 각각 주무부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교육신청 방법은 6개 자격사 모두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창구가 개설되어 있으며, ③ 교육의 종류에는 실무수습교육, 연수교육, 보수교육 등으로 6개 협회 모두 해당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법정교육시간은 최하 8시간에서 최고 1년 이상으로 다소 차이점은 있으나 6개 자격사 모두 전문자격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매년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 변화되는 최신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연수교육이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⑤ 교육기관과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자격사 등록은 주무부처 또는 협회에서 하더라도 전문교육은 모두 해당 자격사 협회가 주관하여 주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주부부처의 예산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⑥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및 동영상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회만 개설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5개 자격사 협회에서는 모두 사이버 또는 동영상 강의를 위한 온라인 연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2] 유사 전문자격사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표

자격사명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록기관	대한 변호사협회 (법7조)	특허청장 (법5조)	금융위원회 (법7조)	대한 법무사협회 (법7조)	고용노동부 (법5조)	기획재정부 (법6조)
교육신청 방 법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교육의 종류	연수교육 수습연수	연수교육	실무수습 연수교육	등록 전 연수교육	연수교육 보수교육	실무교육 보수교육
법 정 교육시간	매년 8시간 변호사시험합 격자 수습 6개월 이상	2년 주기 24시간	직무수행 전 1년 이상	자격인정 자: 1주 이상 연 4회 시험합격자: 3주 이상	연수교육 : 6월~1년 보수교육 : 매년 8시간	등록 전 실무 : 6개월 이상 보수교육 : 매년 8시간
교육기관	대한 변호사협회 주관	대한 변리사회 주관	회계법인 한국공인 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대한 법무사 협회 주관	한국공인 노무사협회, 대학 등	한국 세무사회 주관
사이버 및 동영상강의	변호사 온라인 연수원	동영상 강의가능	사이버회계 연수원 운영	법무사 온라인 연수원	없음	세무연수원 온라인 강의

3. 유사 전문자격사와의 교육프로그램 비교분석 결과

가. 행정사와 유사 자격사와의 교육시스템 비교

[표 3-3]과 같이 행정사와 유사 전문자격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유사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실무수습 교육시간을 최하 6개월

에서 1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행정사는 실무수습교육으로 업무 신고 시 60시간 1회이고, 연수교육도 제도는 있으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사도 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처럼 매년 8시간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변리사처럼 2년 주기로 24시간의 연수교육을 하는 방안과 함께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처럼 인터넷 온라인 연수원을 개설하여 동영상이나 사이버 강의를 통해 수시로 전문분야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면 보다 향상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행정사의 자질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3] 유사 전문자격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표

자격사	감독기관	협 회 명	등록기관	교육기관	교육의 종류	법정 교육시간	온라인 교육창구
행정사	행정 안전부	- 대한행정사협회 - 한국일반행정사 - 한국행정사협회 - 공인행정사협회 - 전국행정사협회 - 외국어번역 행정사 - 기술행정사협회 총 7개 협회 분산	- 도지사 - 시장 - 군수 -구청장	- 지방자치 단체 - 행정사 - 대학	실무교육 연수교육	실무교육 (60시간) 연수교육 (필요시)	인터넷 온라인
변호사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	대한 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 협회 (법무법인, 법률 사무소 등)	연수교육 수습교육	매년8시간 수습교육 6개월	인터넷 온라인
변리사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특허청장	대한변리사회 주관	연수교육	2년 주기 24시간	인터넷 온라인
공인 회계사	기획 재정부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위원회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실무수습 연수교육	직무수행 전 1년 이상	인터넷 온라인
법무사	법무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 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 협회 주관	등록 전 연수교육	1주~4주	인터넷 온라인
공인 노무사	고용 노동부	한국공인 노무사협회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협회 - 대학	연수교육 보수교육	연수교육 (6월~1년)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인터넷 온라인
세무사	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주관	실무교육 보수교육	실무교육 6개월 이상 보수교육 매년8시간	인터넷 온라인

나. 행정사와 유사 자격사와의 비교분석 결과

행정사와 유사 자격사의 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들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해 본 결과 유사 자격사와 행정사의 교육제도는 비슷하나 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고, 정기적인 연수교육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교육시간이 유사 자격사에 비해 짧아서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교육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행정사 의무등록제 및 단일화 통한 체질개선이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의 유사 전문자격사는 자격사 관리·감독청인 중앙행정기관에서 감독역할을 하면서 각 협회에 자격사 관리 및 운영권을 주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사는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뀌면서 행정사 사무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 협회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주지 않고 있어서 행정사가 허수아비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변호사, 법무사가 각각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에 의무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도 자격을 취득하면 지방행정사협회를 경유하여 중앙행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또한, 위 <표 3-6>에서 보는바와 같이 협회가 7개로 난립되어 있어 행정사 교육이나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 효율적인 운영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행정사를 단일화 하여 행정사 미래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의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사 교육시스템의 질적 개선 및 분야별 전문화이다. 행정사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권리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공익을 실현하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사 업무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잡 다양한 민원행정, 구제행정 등을 잘 수행하여 결국 국민의 생활편익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들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배우는 일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하는 일이 행정사들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현행 행정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전문화해야 하고, 행정사는 대한변호사협회처럼 행정사의무등록,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업무개선, 행정사 권익보호, 행정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맡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행정사제도의 활성화와 미래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경력행정사와 시험합격 행정사의 차별화 및 분야별 심화교육이 요구된다. 2018년 말 현재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353,725명이나 영업신고를 하고 행정사업을 수행한 행정사는 약 2.5%에 불과한 8,789명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젊은 행정사는 1,850명(0.5%)으로 극소수인 반면에 공무원경력 행정사는 99.5%로 행정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8,789명의 행정사 중에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5,659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고, 50대 이하 젊은 층의 행정사는 총 3,130명으로 36%의 분포를 이루고 있어 60대 이상 행정사가 50대미만 행정사보다 2,529명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정사 제도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보면 행정사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연구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력행정사와 시험합격 행정사의 교육을 어떻게 선별하여 운영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경력행정사는 이론 교육에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시험 합격한 젊은 층의 행정사는 경륜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실무수습 교육에 비중을 높여 상호 차별화 하여 유사 자격사처럼 주기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면 행정사 자질향상과 역량강화 측면에서 평준화를 이루면서 전문행정사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행정사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제 1 절 연구설계

1. 자료수집

본 설문조사는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사제도 및 행정사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사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행정사 소속 회원들과 행정사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50명의 행정사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사전에 작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서울특별시 소재 행정사 관련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이메일로 배포한 뒤 이메일 또는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회수된 응답지는 최종 120명((회수율 80%)이다. 회수된 응답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일부 문항의 경우 무응답 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커다란 부실 또는 오류가 없어 120부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본 설문조사 총 소요 시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15일간이었다.

2. 설문지 구성

본 설문지 문항은 행정사에 관한 사항, 행정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응답자 일반사항, 행정사 정책건의 및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재 행정사가 7개로 분산 난립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 통합에 관한 문제, 행정사 등록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 하였고, 행정사 관해서는 현재 행정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심판 등 구제행정 업무를 얼마만큼 수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하였으며,

특히, 행정사에 대한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고자 실무교육의 만족도와 교육시간의 적절성, 그리고 행정사 관련 강의를 대학이나 대학원에 개설할 경우 참여의사 여부, 행정사 교육 강사진의 직종 선호도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이 큰 특징이다. 설문지 문항은 기존 연구 설문 구조에 연구자가 개발한 항목들을 사용하였으며, 명목척도와 리커트척도를 사용한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들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은 [표 4-1]과 같다.

[표 4-1] 설문지 구성 내용

문항 번호	문항구분	설문문항내용	비고
1	행정사 협회에 관한 사항	1) 행정사 명칭 2) 행정사 협회의 역할 3) 협회의 단일화 여부 4) 행정사 등록여부	설문조사
2	행정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행정사 주요 수입업무 2) 수입 1건당 평균 수입료 3) 행정심판 수입건수	설문조사
3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1) 실무교육시간의 적정성 2) 향후 실무교육의 적정성 3) 실무교육 주관기관 선호도 4) 행정사 역량강화 학위과정 대학 또는 대학원 개설시 참여여부 6) 연수교육 참여여부 7) 연수교육기관명 8) 교육참여 동기(실무교육+연수교육) 9) 실무교육 참여시기 10) 연수교육방법 선호도 11) 사이버 및 동영상 강의 적합기관 12) 실무교육 만족도) 13) 연수교육 만족도 14) 교육 후 업무능력 향상도 15)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강사 선호자 16) 실무교육 사전공고 적절성 17) 필요한 행정사교육	설문조사
4	응답자 일반사항	1) 성별, 학력, 연령 2) 자격취득 구분(공무원경력, 자격시험) 3) 행정사 구분(일반, 기술, 외국어) 4) 행정사 경력 5) 활동지역, 거주 지역	설문조사
5	행정사 정책건의 및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	행정사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제안 의견청취	설문조사

3.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IBM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설문조사의 각 문항들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행정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행정사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이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무응답으로 결측값이 있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 2 절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들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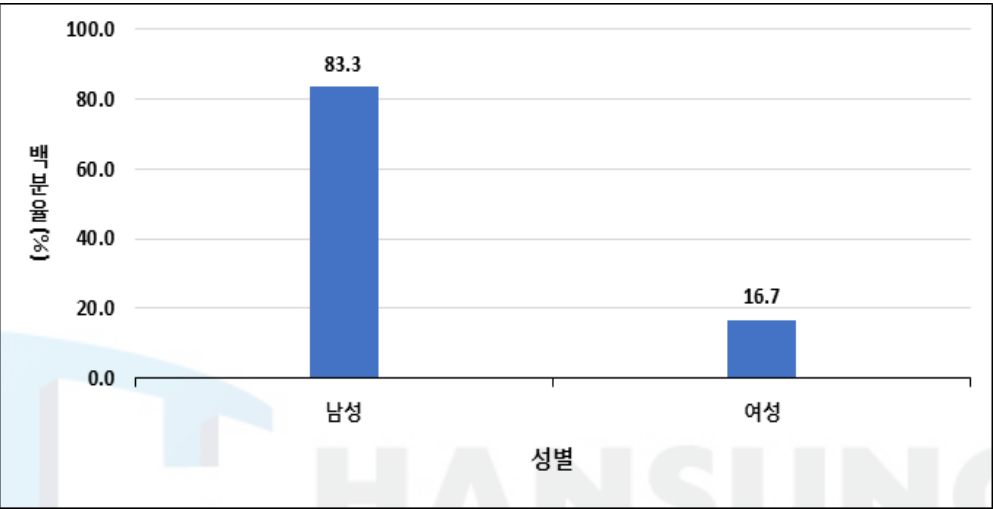
문항내용	응답	빈도	백분율
성별 (N=120)	남성	100	83.3
	여성	20	16.7
학력 (N=118) (무응답 2명)	고졸	10	8.5
	대졸	66	55.9
	대학원졸	42	35.6
연령대 (N=118) (무응답 2명)	20~30세 미만	3	2.5
	30~40세 미만	9	7.6
	40~50세 미만	18	15.3
	50세 이상	88	74.6
자격취득 구분 (N=119) (무응답 1명)	공무원 경력 (시험면제)	97	81.5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	22	18.5
행정사 종류 구분 (N=120)	일반행정사	119	99.2
	기술행정사	1	0.8

행정사 업무경력 (N=119) (무응답 1명)	5년 미만	88	73.9
	5~10년 미만	25	21.0
	10~20년 미만	5	4.2
	20년 이상	1	0.8
활동지역 (N=116) (무응답 4명)	전국	36	31.0
	수도권	68	58.6
	비수도권	12	10.3
거주지역 (N=106) (무응답 14명)	서울	63	59.4
	부산	2	1.9
	인천	2	1.9
	광주	2	1.9
	경기	25	23.6
	강원	3	2.8
	충북	4	3.8
	충남	1	0.9
	전북	1	0.9
	전남	1	0.9
	경북	1	0.9
	경남	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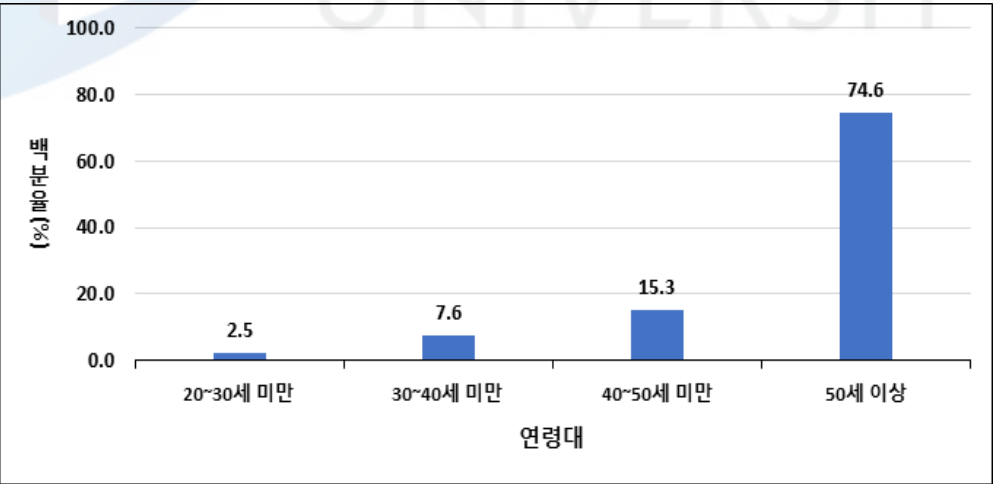
가. 성별 및 연령

유효자료의 표본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이 행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들의 성별은 남성이 100명(83.3%), 여성이 20명(16.7%)으로 남성이 더 많았으며, 이것은 행정사들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이다. 한편 연령대는 <그림 4-2>와 같이 50세 이상이 88명(74.6%)으로 가장 많았고, 40~50세 미만 18명(15.3%), 30~40세 미만 9명(7.6%), 20~30세 미만 3명(2.5%) 순으로 나타났으며, 2명은 질문에 응답

하지 않았다. 행정사업을 하는 8,789명의 행정사중 50대 이상이 7,322명으로 83.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문조사 응답자도 50세 이상 고령자가 행정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 4-1] 응답자의 성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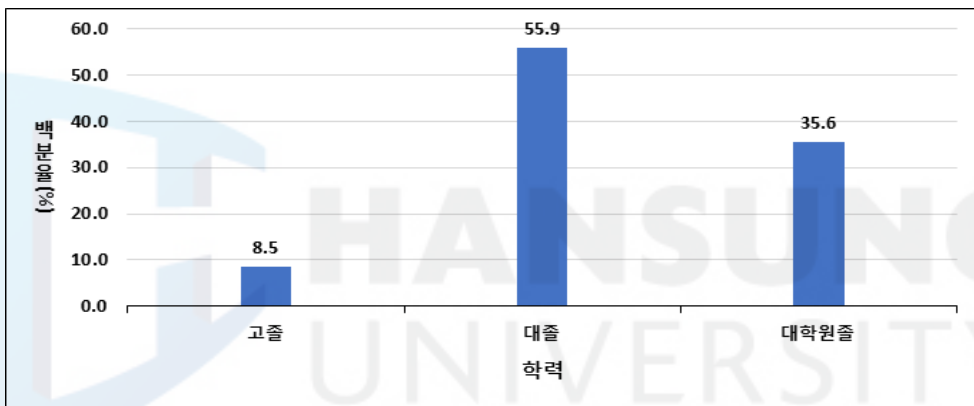


[그림 4-2]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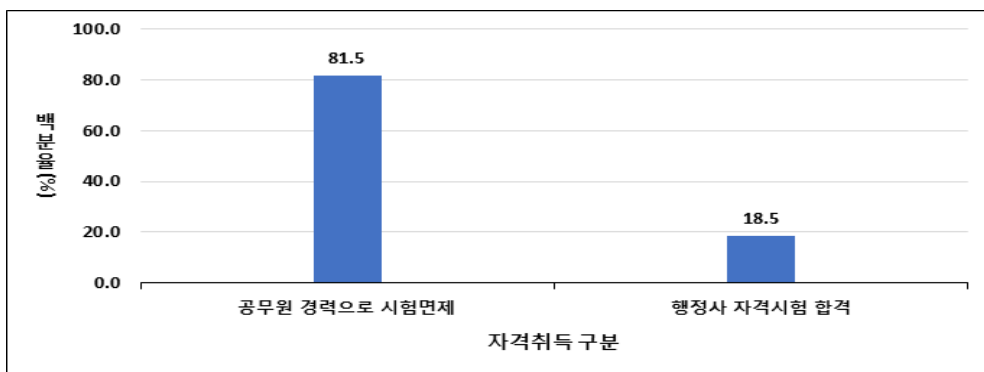
나. 학력 및 자격취득자

학력을 보면 [그림 4-3]과 같이 대졸이 66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 42명(35.6%), 고졸 10명(8.5%) 순으로 나타났으며, 2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조사대상이 경력공무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행정사로서 대졸 및 대학원졸 출신의 고학력자가 고졸출신보다 훨씬 많다는 사회적 현상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격취득 방식은 [그림 4-4]와 같이 공무원경력으로 시험을 면제받은 경우가 97명(81.5%),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22명(18.5%)으로 공무원 경력자가 많았으며, 1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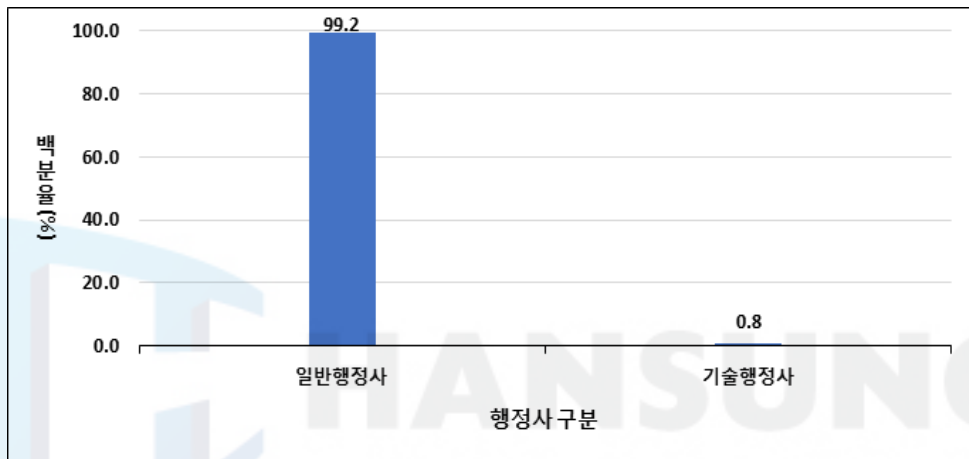
[그림 4-3]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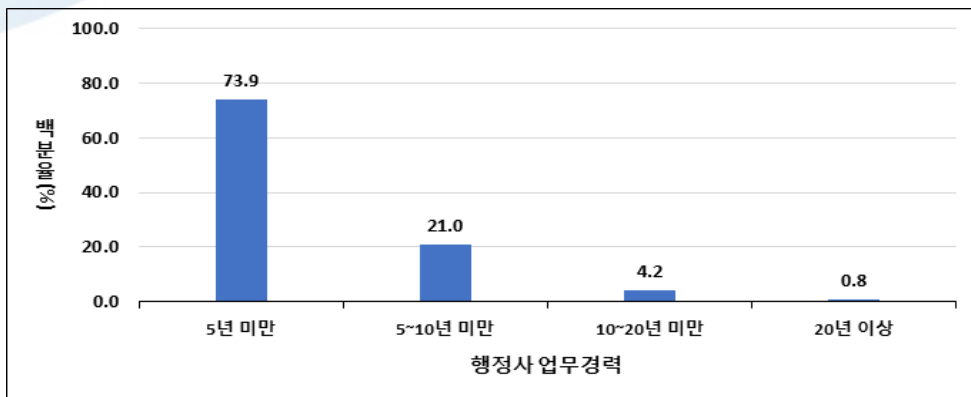
[그림 4-4] 응답자의 자격취득별 분포도

다. 행정사 종류 및 업무경력

행정사 종류별 표본을 보면 [그림 4-5]와 같이 일반행정사가 119명 (99.2%)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기술행정사가 1명(0.8%)이었으며, 업무 경력은 [그림 4-6]과 같이 행정사 업무경력은 5년 미만인 경우가 88명 (73.9%)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25명(21.0%), 10~20년 미만 5명(4.2%), 20년 이상 1명(0.8%) 순으로 나타났으며, 1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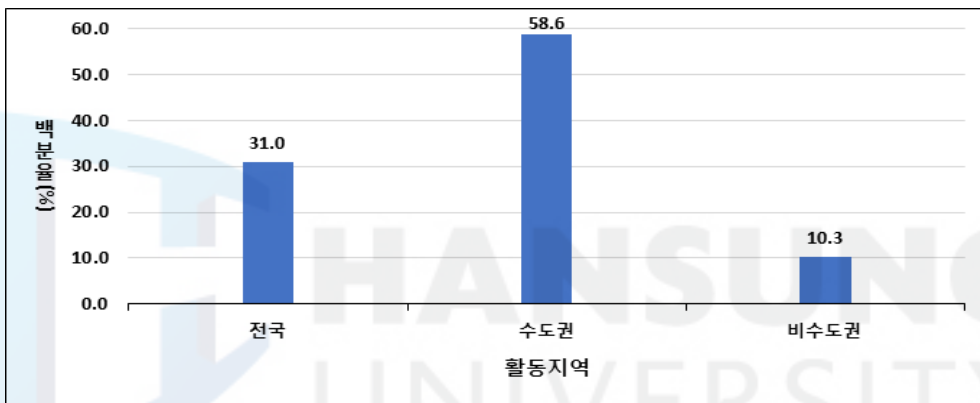
[그림 4-5] 응답자의 행정사 종류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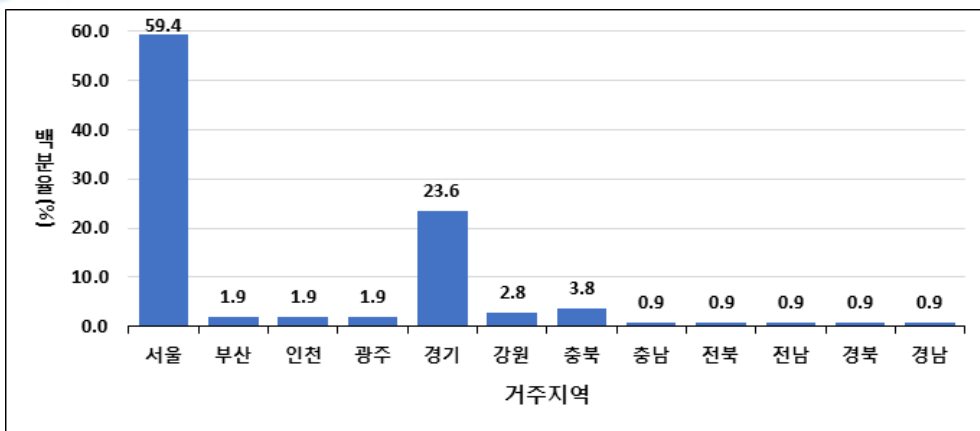
[그림 4-6] 응답자의 업무경력별 분포도

라. 응답자의 행정사 활동지역 및 거주 지역

행정사업 활동지역으로는 [그림 4-7]과 같이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68명(58.6%)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적으로 활동 36명(31.0%), 비수도권에서 활동 12명(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4명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거주 지역은 [그림 4-8]과 같이 서울거주가 63명(59.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명(23.6%), 충북 4명(3.8%), 강원 3명(2.8%), 부산, 인천, 광주가 각각 2명(1.9%),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각각 1명(0.9%) 순으로 나타났으며, 14명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림 4-7] 응답자의 활동지역별 분포도



[그림 4-8]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도

2. 행정사 협회의 역할과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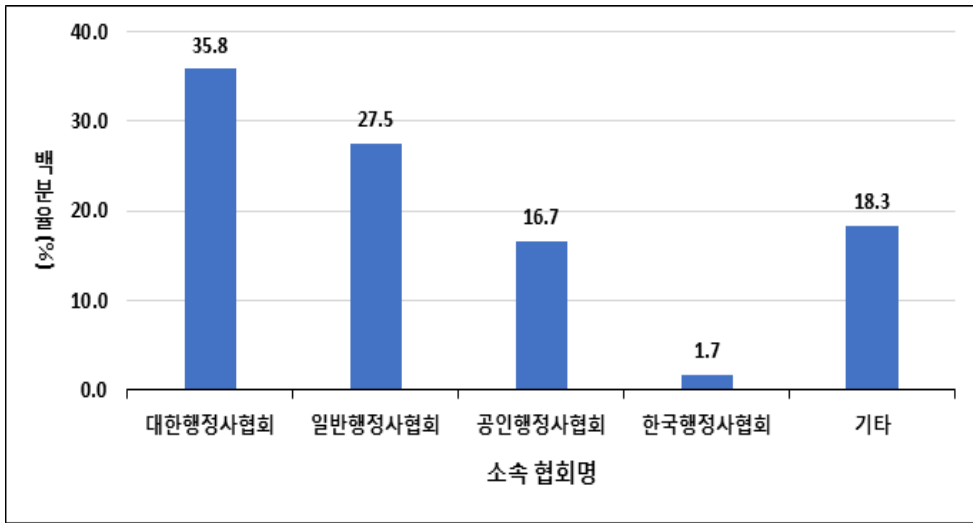
본 연구에 참여한 행정사들에게 협회에 관한 의견들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가. 설문에 참여한 행정사 협회

[표 4-3]과 같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120명중 대한행정사협회가 43명 (35.8%)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일반행정사협회 33명(27.5%), 공인행정사협회 20명(16.7%), 한국행정사협회 2명(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협회 소속이 없는 응답자가 22명(18.3%)으로 [그림4-9]와 같다.

[표 4-3] 행정사 협회의 역할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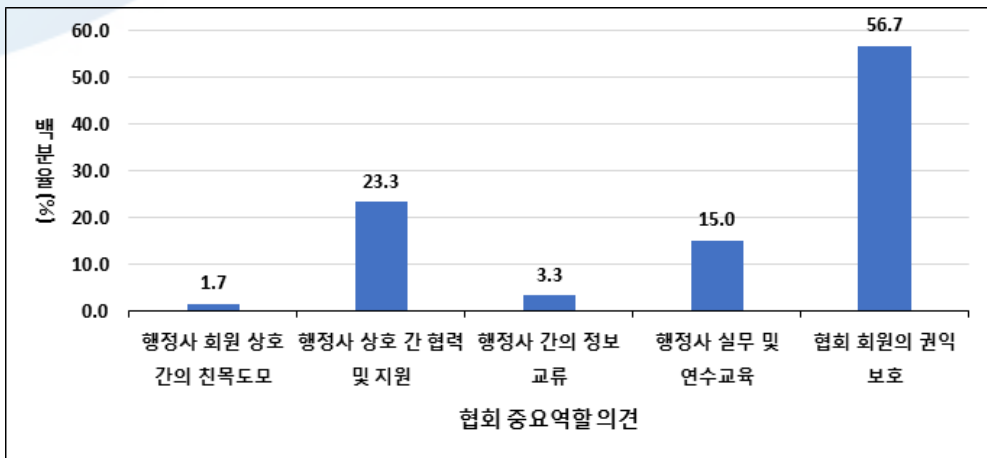
문항내용	응답	빈도	백분율
소속 행정사 협회명 (N=120)	대한행정사협회	43	35.8
	일반행정사협회	33	27.5
	공인행정사협회	20	16.7
	한국행정사협회	2	1.7
	기타	22	18.3
행정사 협회 중요 역할 (N=120)	행정사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2	1.7
	행정사 상호 간 협력 및 지원	28	23.3
	행정사 간의 정보 교류	4	3.3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18	15.0
	협회 회원의 권익 보호	68	56.7
분산된 협회 개선방안(N=119) (무응답 1명)	전국적 단일화	27	22.7
	단일화하되 지방별 협회를 둬	84	70.6
	기능별 단일화	5	4.2
	현행 유지	3	2.5
업무신고 후 협회등록의 필요성 (N=120)	매우 동의함	50	41.7
	동의하는 편	61	50.8
	보통	2	1.7
	동의하지 않는 편	5	4.2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1.7



[그림 4-9] 행정사 협회별 설문조사 참여 분포도

나. 행정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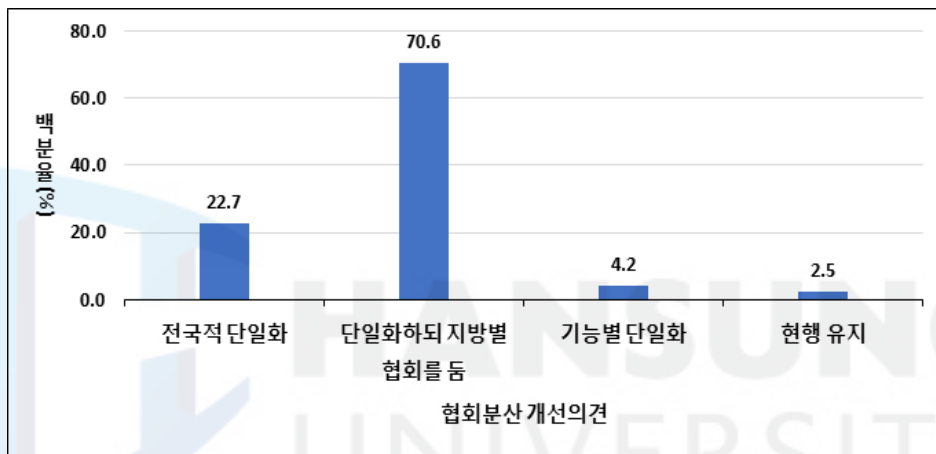
행정사들이 생각하는 협회의 중요한 역할은 협회 회원의 권익보호라는 의견이 68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사 상호간의 협력 및 지원 28명(23.3%),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18명(15.0%), 행정사 간의 정보 교류 4명(3.3%), 행정사 회원 간 친목도모 2명(1.7%) 순으로 [그림 4-10]과 같다.



[그림 4-10] 행정사의 역할

다. 행정사의 단일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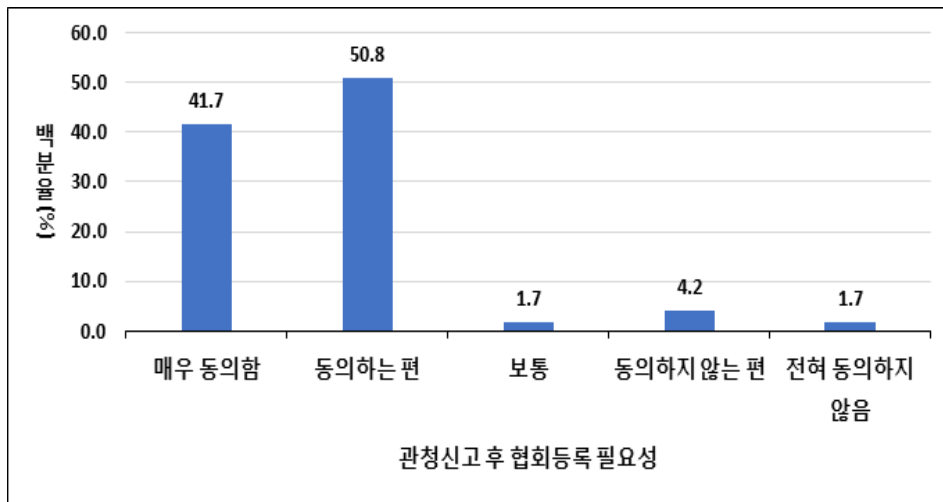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사에 대한 개선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그림 4-11]과 같이 단일화를 하되 중앙회와 지방별로 지방협회를 두자는 의견이 84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적 단일화 27명(22.7%),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등 기능별로 단일화 5명(4.2%), 현행대로 유지 3명(2.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7개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사 협회를 반드시 하나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림 4-11] 행정사협회의 단일화 여부

라. 행정사 의무등록 여부

행정사 업무신고 후 협회에 의무등록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림 4-12]와 같이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61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동의함이 50명(41.7%), 동의하지 않는 편 5명(4.2%), 보통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 각각 2명(1.7%)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한 편이 전체 120명중 111명(92.5%)이 응답하여 행정사의 협회 의무등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행정사협회 의무등록 여부 의견

3. 행정사제도의 운영

본 연구에 참여한 행정사들에게 행정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의견들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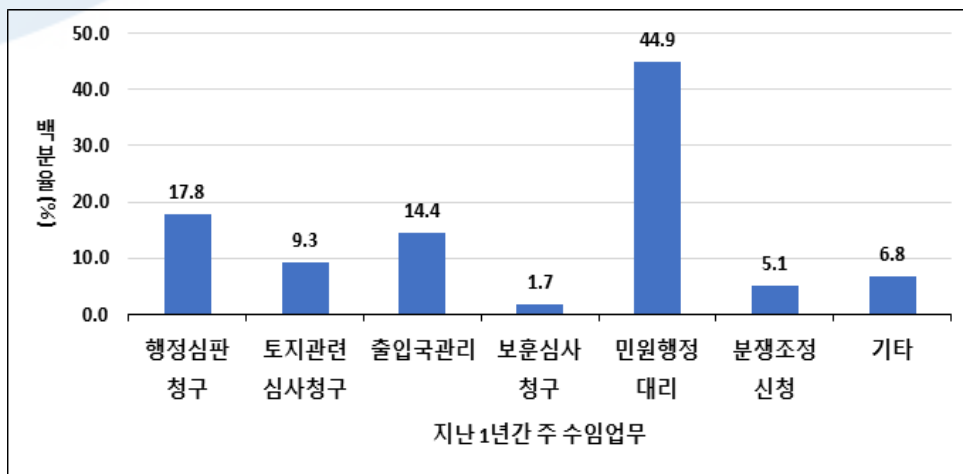
[표 4-4] 행정사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문항내용	응답	빈도	백분율
지난 1년간 주 수입업무 (N=118) (무응답 2명)	행정심판 청구 업무	21	17.8
	토지 형질변경 및 토지보상 심사청구 업무	11	9.3
	비자 연장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	17	14.4
	국가유공자 등록 등 보훈심사 청구 업무	2	1.7
	인·허가 민원행정의 신청·청구, 신고 등의 대리(代理)업무	53	44.9
	건설, 환경, 의료 등 분쟁조정 신청업무	6	5.1
	기타	8	6.8

지난 1년간 주 수입업무 의 1건당 평 균 수입료 (N=120)	100만원 미만	69	57.5
	100~200만원 미만	16	13.3
	200~300만원 미만	19	15.8
	300~500만원 미만	7	5.8
	500~1000만원 미만	6	5.0
	1000만 원 이상	3	2.5
연간 행정심판 수입건수 (N=95) (무응답 25명)	5건 미만	56	58.9
	5~10건 미만	24	25.3
	10~20건 미만	8	8.4
	20~50건 미만	4	4.2
	50건 이상	3	3.2

가. 지난 1년간 주수입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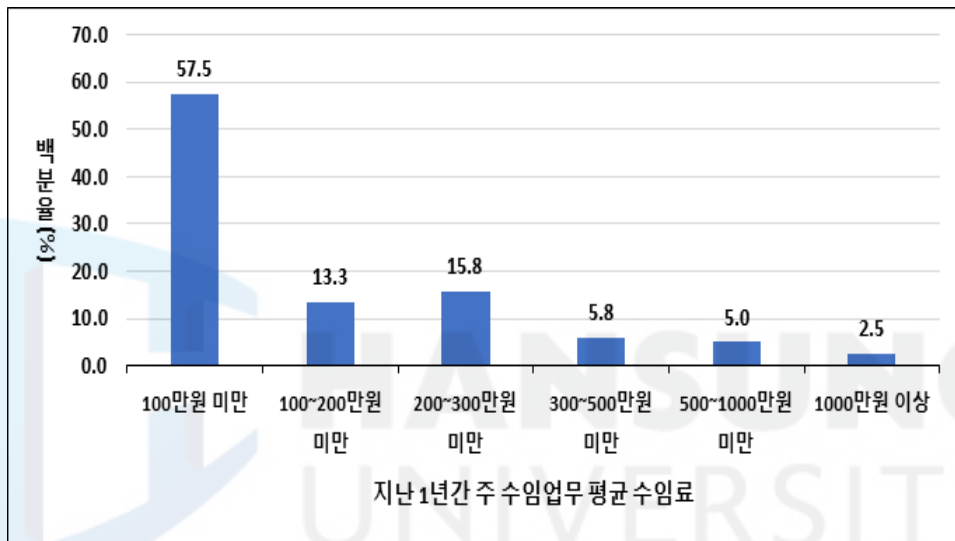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주로 수입했던 업무의 종류는 [그림 4-13]과 같이 인·허가 등 민원행정 대리업무가 53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심판 청구업무 21명(17.8%), 출입국관리 업무 17명(14.4%), 토지관련 심사청구 업무 11명(9.3%), 분쟁조정 신청업무 6명(5.1%), 보훈심사 청구 업무 2명(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업무로 응답한 경우는 8명(6.8%)이었고, 2명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림 4-13] 지난 1년간 주 수입업무

나. 지난 1년간 주 수입업무의 1건당 평균 수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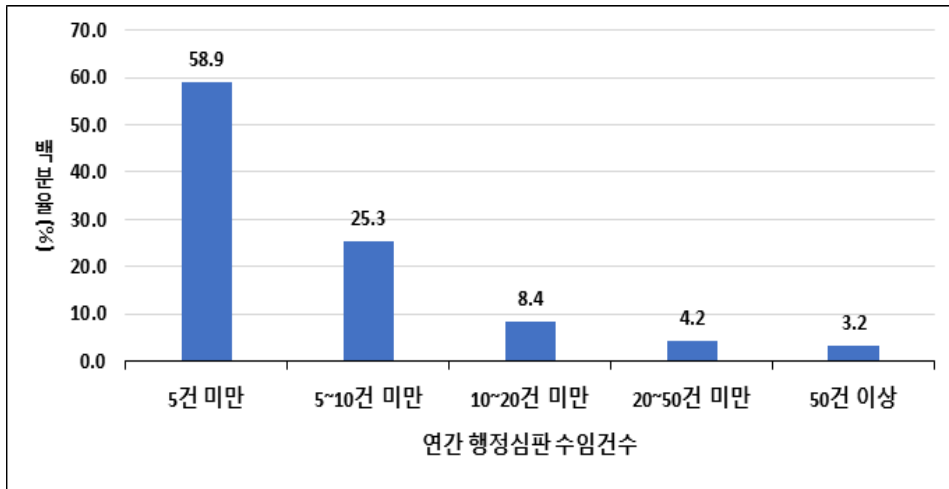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주로 수입했던 업무의 1건당 평균 수입료는 [그림 4-14]와 같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69명(57.5%)으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 19명(15.8%), 100~200만원 미만 16명(13.3%), 300~500만원 미만 7명(5.8%), 500~1000만원 미만 6명(5.0%), 1000만 원 이상 3명(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지난 1년간 주 수입업무의 1건당 평균 수입료

다. 연간 행정심판 청구업무의 수입건수

연간 행정심판 청구업무의 수입건수는 [그림 4-15]와 같이 5건 미만이라는 응답이 56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5~10건 미만 24명(25.3%), 10~20건 미만 8명(8.4%), 20~50건 미만 4명(4.2%), 50건 이상 3명(3.2%) 순으로 나타났으며, 25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응답하지 않은 행정사는 주 수입업무가 행정심판 청구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4-15] 연간 행정심판 수임건수

4. 행정사 교육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행정사들에게 행정사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가. 실무교육 개선 여부

현행 실무교육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1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적절하지 않음 27명(22.5%), 보통 19명(15.8%), 적절함 11명(9.2%), 매우 적절함 2명(1.7%) 순으로 나타나 실무교육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전체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하다고 응답한 행정사는 26.7%에 불과하여 대체적으로 실무교육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면 실무교육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100~150시간 미만과 200시간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0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150~200시간미만 23명(26.4%), 60~100시간미만 4명(4.6%) 순으로 나타났으며, 33명(27.5%)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아서 현행대로 60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72.5%는 대체적으로 실무교육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향후 실무교육시간을 기본적인 행정사 업무수행이 가능

하도록 충분한 시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무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을 어디로 해야 하느냐의 질문에는 행정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90명(75.0%)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21명(17.5%), 대학 3명(2.5%), 행정사 관련 단체 2명(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4명(3.3%)으로 나타나 행정사가 실무교육에 대한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업을 시작하려면 행정사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신고 전에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결과 행정사 업무신고 직전에 받은 경우가 67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취득 후 즉시 27명(23.3%), 주변 행정사의 권유 후 17명(14.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5명(4.3%)이었으며, 4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 업무신고 직전에 받았다는 행정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행정사업을 하기 전에는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어 행정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실무를 갖추지 않고 있어 행정사자격증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 후에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실무교육 60일 이전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76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27명(22.7%), 적절하지 않음 11명(9.2%), 전혀 적절하지 않음 3명(2.5%), 매우 적절함 2명(1.7%) 순으로 나타났으며, 1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무교육 사전공고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 연수교육 개선 여부

연수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을 어디로 해야 하느냐의 질문에는 행정사가 좋다는 의견이 73명(61.9%)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23명(19.5%), 대학 18명(15.3%), 행정사 관련 단체 4명(3.4%) 순으로 나타났으며, 2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수교육도 실무교육과 함께 행정사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정식으로 학위과정이 개설된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48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 33명(27.7%), 보통과 그렇지 않다가 각각 14명(11.8%), 전혀 그렇지 않다 10명(8.4%) 순으로 나타났으며, 1명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사 관련 학위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개설되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67.5%로 나타나 대학원 등에 학위개설이 필요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현재 행정사법에 행정사의 자질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제도가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연수교육 경험이 있다는 의견이 42명(36.8%), 없다는 의견이 72명(63.2%)으로 연수교육을 받아 본 경험 없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6명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사 연수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는 행정사가 더 많고 현재 실질적으로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향후 행정사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프로그램개발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연수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42명이 연수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는 행정사 제공정보를 통해 참여했다는 응답이 22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추천 7명(17.1%), 행정사조합 등 행정사 단체가 제공한 정보 3명(7.3%),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 지정 장소에 직접 문의 2명(4.9%)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7명(17.1%)이었으며, 1명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연수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는 행정사가 연수교육 정보를 획득한 경로는 행정사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행정기관에서 연수교육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공인행정사협회처럼 사설학원을 연계한 동영상 강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수교육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집체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명(59.8%)으로 가장 많았고, 집체교육 41명(35.0%), 사이버교육 6명(5.1%) 순으로 나타났으며, 3명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이버교육에 어떤 교육기관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은 행정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85명(71.4%)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23명(19.3%), 사설 행정사 학원 7명(5.9%)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4명(3.4%)이었고, 1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수교육은 실무교육과 같이 행정사에서 주관하되 집체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다.

다. 행정사 교육 만족도 조사

현행 실무교육의 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45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하지 않는 편 34명(28.8%), 만족하는 편 19명(16.1%), 전혀 만족하지 않음 14명(11.9%), 매우 만족함 6명(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실무교육의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하다는 의견이 20.8%로 매우 저조한 편이고 보통 또는 불만족 하다는 의견이 79.2%로 대체적으로 실무교육이 행정사 소양 및 실무를 갖추는 교육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현행 연수교육의 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42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하지 않는 편 31명(30.1%), 만족하는 편 15명(14.6%), 전혀 만족하지 않음 13명(12.6%), 매우 만족함 2명(1.9%) 순으로 나타났으며, 17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수교육의 만족도도 실무교육과 비슷하게 응답하여 연수교육도 실무교육처럼 교육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으며, 내용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후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6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향상됨 38명(32.5%), 변화 없는 편 21명(17.9%), 매우 향상됨 7명(6.0%), 전혀 변화 없음 5명(4.3%) 순으로 나타났으며, 3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행정사교육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도를 묻는 질문에 조금 향상되었다는 의견 32.5%이고, 향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67.5%인 점을 보면 행정사 교육이 형식에 그치고, 내용도 불충분하며, 교육 프로그램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담당할 강사의 출신별 선호도를 보면 실무 행정사 출신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86명(73.5%)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17명(14.5%), 대학교수 13명(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1명(0.9%)이었고, 3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표 4-5] 행정사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구분	문항내용	응답	빈도	백분율
실무교육 분야	현행 실무교육시간 적절성 의견 (N=120)	매우 적절함	2	1.7
		적절함	11	9.2
		보통	19	15.8
		적절하지 않음	61	50.8
		전혀 적절하지 않음	27	22.5
	실무교육시간 개선의견 (N=87) (무응답 33명)	60~100시간미만	4	4.6
		100~150시간미만	30	34.5
		150~200시간미만	23	26.4
		200시간 이상	30	34.5
	실무교육 주관기관 의견 (N=120)	정부	21	17.5
		행정사	90	75.0
		대학	3	2.5
		행정사 관련 단체	2	1.7
		기타	4	3.3
	업무신고 전 실무교육 시기 (N=116) (무응답 4명)	자격취득 후 즉시	27	23.3
		행정사 업무신고 직전	67	57.8
		주변 행정사의 권유 후	17	14.7
		기타	5	4.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실무교육 공고방식(교육 60일 이전 신문 및 홈페이지) 적절성 의견 (N=119) (무응답 1명)	매우 적절함	2	1.7
		적절함	76	63.9
		보통	27	22.7
		적절하지 않음	11	9.2
		전혀 적절하지 않음	3	2.5
연수교육 분야	연수교육 주관단체 의견 (N=118) (무응답 2명)	정부	23	19.5
		행정사	73	61.9
		대학	18	15.3
		행정사 관련 단체	4	3.4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 개설시 참여 의사 (N=119) (무응답 1명)	매우 그렇다	33	27.7
		그렇다	48	40.3
		보통이다	14	11.8
		그렇지 않다	14	11.8
		전혀 그렇지 않다	10	8.4

	연수교육 경험(N=114) (무응답 6명)	있음	42	36.8
		없음	72	63.2
	연수교육 참여계기 (N=41) (무응답 1명)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 지정 장소에 직접 문의	2	4.9
		행정사 제공정보	22	53.7
		행정사 등 행정사 단체의 제공정보	3	7.3
		지인 추천	7	17.1
		기타	7	17.1
	연수교육 방법 의견 (N=117) (무응답 3명)	집체교육	41	35.0
		사이버교육	6	5.1
		집체교육+사이버교육	70	59.8
	사이버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 (N=119)(무응답 1명)	행정사	85	71.4
		대학교	23	19.3
		시설 행정사 학원	7	5.9
		기타	4	3.4
행정사교육 만족도	현행 실무교육 만족도 (N=118) (무응답 2명)	매우 만족함	6	5.1
		만족하는 편	19	16.1
		보통	45	38.1
		만족하지 않는 편	34	28.8
		전혀 만족하지 않음	14	11.9
	현행 연수교육 만족도 (N=103) (무응답 17명)	매우 만족함	2	1.9
		만족하는 편	15	14.6
		보통	42	40.8
		만족하지 않는 편	31	30.1
		전혀 만족하지 않음	13	12.6
	실무교육/연수교육 후 업무능력 향 상 여부 (N=117) (무응답 3명)	매우 향상됨	7	6.0
		조금 향상됨	38	32.5
		보통	46	39.3
		변화 없는 편	21	17.9
		전혀 변화 없음	5	4.3
행정사교육 강사선호도	실무교육/연수교육 강사 선호출신 (N=117)(무응답 3명)	공무원	17	14.5
		대학교수	13	11.1
		실무행정사	86	73.5
		기타	1	0.9

5. 행정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향후 행정사교육프로그램에 구성되어야 할 교육내용과 행정사제도의 개선방안 등의 의견을 물어 본 결과 [표 4-6]과 [표 4-7]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행정사제도의 정책연구개발에 활용되었으면 한다.

[표 4-6]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종류에 관한 제언(설문조사 의견)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교재 종류 등 의견
○ 행정사 교육을 초급반과 중급반 고급반으로 구분운영(세미나 토론 포함), ○ 토지보상 및 형질변경 과목, 행정사 관련 법률 및 제도변경사항 ○ 연수교육 필요, 행정심판(청구절차 등) ○ 인성 및 창업교육, 행정사 실무요령, 행정사 전문이론(행정법, 행정학, 민법 등) ○ 출입국 관리업무, 갈등관리 및 상담업무 ○ 민원행정절차(음주운전, 영업정지 등 인허가업무 등) 등 분야별 연수교육 필요, ○ 환경 및 의료분쟁, 분야별 심화교육 ○ 부동산공법 및 공익사업손실보상, 계약실무 및 마케팅관리, 교육시간 3개월로 조정 (교육의 질과 양적 확대 필요) ○ 공문서작성요령, 행정사무소 운영방법 ○ 노동, 환경 공정거래 등 분쟁조정 실무 ○ 감정평가 요령, 개발행위 및 부동산공법 등 ○ 개업사무소 실무, 분야별 전문교육 필요, ○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요령, 영업컨설팅 ○ C.S교육, 입법실무, 멘토링 교육, 교육커리큘럼 체계화 ○ 인허가 등 블루오션, 민법실무 ○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표 4-7] 행정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 정책제언(설문조사 의견)

행정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점, 미래발전방안 관한 의견
○ 행정사를 단일화 하여 행정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필요, ○ 행정사에 등록되지 않은 행정사는 개업 불가 조치 ○ 행정사에 개업행정사에 대한 가사권을 부여 ○ 불법적인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 자격 박탈 ○ 협회 실무교육이 너무 질이 떨어짐. ○ 행정관청의 행정사 대리행위 대한 인식 미흡

- 자격 없는 자의 인허가업무 대리행위 단속 필요
- 행정심판 대리권, 협회 단일화, 등기업무 업력추가
-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사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할 것.
- 고정업무 확보, 법인설립 개정, 고소장 작성, 각종 절차 의견진술권 확보
- 공기업에 행정사로서 취업
- 행정사를 국회, 지방의회, 행정기관 등에 행정전문관제 또는 행정상담관제 도입 배치
- 행정사 시험에 주요 업역과목 추가
- 국가적 지원책이 필요, 직종별 세분화 필요
- 협회의 행정사 권익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협회의 단일화 및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행정 사업에 대한 홍보
-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제화
- 행정사 교육체계 강화 및 개선
- 연수교육제도 강화
- 행정사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강사진 양성
- 행정사의 의지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교육강화 및 협회의 리더십 필요
- 행정사의 권익과 업무영역 침해방지법 개정
- 행정사들의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법제정
- 대학에서 행정사 교육 프로그램 많이 개설
- 협회의 행정사 활성화 노력 필요
- 협회의 대정부 활동 필요
- 행정사의 업무영역의 다변화 필요
- 행정사 교육시스템 개선
- 행정사 협회 통폐합, 행정심판 대리권부여, 법인설립허용, 인식개선 필요
- 행정사가 서류를
- 행정사들의 기본 소양 부족
- 관공서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움
- 협회의 공익적 사명 추구
- 개업 행정사 협회가입 의무화, 상별규정 제정
- 법정 수수료 정함
- 정부 지원받는 교육필요
- 협회차원의 교육 및 지원 부족
- 협회의 행정사 권익 보호
- 행정사의 전문지식 부족
- 행정사 협회가 교육만 하기 보다는 정회원간 정보교류 필요
- 행정청에서 행정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 행정사 협회 중앙회와 지방 행정사회 운영,
- 행정사 법인화 필요,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질적 향상 필요
-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전문연수교육 6개월 이상 이수 개선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살펴 본 행정사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행정사제도 및 운영현황 측면이다. 행정사제도의 체계화 및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행정사의 기능 및 행정사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행정사들이 행정사의 역할을 회원의 권익보호와 행정사 상호간의 협력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행정사 단일화와 행정사 의무등록을 요구하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행정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들의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40대 이하 젊은 층의 행정사가 많지 않아서 행정사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제도가 실시되어 그 역사가 짧고 현재 행정사시험을 합격한 행정사 수가 1,850명밖에 되지 않아서 행정사제도 미래발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행정사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1년간 행정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로는 인허가 등 민원 행정 대리업무가 가장 많았으며, 행정심판 청구업무나 출입국관리 업무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임업무의 1건당 평균수임료는 100만원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1건당 평균수임료가 1,000만 원 이상인 행정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행정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복잡 다양한 행정업무 시장에서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과 같이 고급 행정산업으로 발전하여 행정학과 출신들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들의 행정심판 청구업무 수임건수는 연간 5건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10건 이상 수임한 행정사도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사들이 행정심판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면서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둘째, 행정사 교육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측면이다. 행정사 교육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사 교육제도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제도가

있으나 실무교육은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연수교육은 아직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행정사들은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행정사에서 주관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 실무교육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실무교육 시간을 100시간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실무교육을 받는 시기는 대부분의 행정사업 신고를 하기 직전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행정사도 있으며, 연수교육 참여하게 된 동기는 행정사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참여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공인행정사협회의 경우에는 사설학원과 연계하여 동영상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④ 연수교육 방법은 집체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육주관기관은 행정사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정사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에 행정사 관련 학위 과정이 개설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꽤 높게 나타났으며,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강사 선호도 조사에서는 실무행정사가 가장 높았고 공무원, 대학 교수 순이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 실무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이 꽤 높았으며, 실무교육 후 업무능력 향상이 별로 없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현재 행정사 실무교육이 형식에 그치고, 교육시간도 짧으며, 내용도 불충분하여 교육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검토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분야 의견을 취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사들에게 행정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결과 행정사 교육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행정사의 기본소양을 바탕으로 전문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과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육과목으로는 기본소양과목으로 행정사 전문이론(행정법, 행정학, 민법, 행정사법 등),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고객만족, 입법실무 등의 과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교육과목으로 행정심판, 토지형질변경, 토지보상, 출입국관리, 환경 및 의료분쟁 등 분쟁조정 사례, 인허가 등 민원행정 처리요령, 감정평가 요령, 창업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 향후 행정사 교육 프로그램이 실무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행정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사들에게 행정사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물어본 결과 행정사 의무등록, 행정사 단일화, 행정사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행정사 법인 설립 허용, 행정사 교육시스템 개선, 행정사 법정수수료 책정, 행정사 권익보호,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전문연수교육 6개월 이상 이수 도입, 행정사 교육체계 강화, 행정사 교육 강사양성,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행정사교육 정부지원, 관공서 행정사 인식 제고 위한 대책 필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사도 위원으로 참여, 행정기관, 국회, 지방의회에 행정상담관 또는 행정전문관 배치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들을 검토하여 행정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행정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수행하면서 많은 행정사들이 행정사제도 및 교육시스템 미비점으로 행정사 활동에 한계를 체험하고 있고 관계기관의 무관심 등으로 교육에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등 행정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행정사법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구사항이 있지만 행정사제도적 측면에서는 주요 핵심과제인 행정사 의무등록제, 행정심판 대리권부여, 행정사 법인설립 허용 등의 요구조건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실무에 적합한 교육과목의 구성, 전문행정사 교육 강사 양성, 교육기관의 일원화와 주기적인 교육실시, 전문교육 습득을 위한 충분한 교육시간 조정 등 행정사 교육관련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사들이 자질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민봉사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질을 높이도록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지금까지 행정사제도의 운영현황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행정사제도의 의의 및 특징, 우리나라 행정사제도의 기원과 역사 변천과정, 행정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등을 통해 행정사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현행 행정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유사 자격사의 교육프로그램의 비교분석을 통해 행정사의 교육프로그램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으며, 행정사업을 하는 행정사를 대상으로 행정사제도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행정사제도의 개선방안

첫째, 행정사 의무등록제 개선이다. 2018년 말 현재 행정안전부 행정사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총 353,725명으로 이중 8,789명(약 2.5%)만 업무신고를 하였으며, 이중에서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총 8,214명이고 휴업중인 행정사는 575명으로 최근 5년간 영업 행정사는 줄고 휴업 행정사는 늘어하는 현상을 보여 행정사업이 국내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이 미치기도 하겠지만 행정사등록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운영하면서 행정사 조직체계가 와해되고 있고, 행정사시스템 및 체제부실로 아직도 행정사 제도가 행정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는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의무등록을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행정사도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처럼 의무등록제를 실시해야 하고, 행정사 감독은 행정안전부가 하되 행정사 대한 관리 및 운영은 행정사협회가 하도록 하여 자율적 경영을 통해 행정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분산된 행정사협회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행정사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조력자의 역할과 함께 일반서민들의 권리구제 및 인허가 등 원활한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행정 전문가로서 책임과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고, 엄격한 자기통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협회를 통한 자격사관리가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사는 7개 협회로 난립되어 있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상호 경쟁을 위한 적대자로서 분열된 모습에서 국민을 위한 민원행정과 구제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7개 협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행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사를 단일화 하되 중앙회와 지방별로 지방협회를 두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행정사들의 개선방안 제안의견에서도 다수가 행정사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7개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사를 하나로 단일화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고 국민편익을 위한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협회의 단일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행정사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가 요구된다. 날로 복잡 다양해져 가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 및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행정사법에서 보장된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행정심판 관련 설문조사결과 지난 1년간 주로 수임했던 업무 중에 행정심판 청구업무를 주요 수임업무로 한 행정사가 다수 있었으며, 연간 행정심판 수임건수도 대다수가 5건~20건 정도로 행정사 업무 중에 행정심판 청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도 꽤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 세무사 등 유사 전문자격사가 갖고 있는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권을 형평성, 공정성을 떠나서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 하여 행정 법률에 무지한 국민들과 영세 서민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침해로부터 구제해 주는 일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행정심판에 참석하여 민원당사자의 대변자로서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해 보겠다는 행정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정심판 대리권에 관한 사항을 행정사법에 명시하여 대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행정사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행정기관, 국회, 지방의회 등에 민원행정 전문관제 운영이 필요하다. 행정기관과 국민의 생활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국민은 행정기관, 국회, 지방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생업과 관련한 민원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각종 법령에 따른 민원행정의 종류만도 총 5,445종으로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각종 민원들로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개인의 권리침해로 인한 다툼으로 분쟁조정이나 행정심판 등의 개인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통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민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나 국회, 지방의회 등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행정과 구제행정을 상담해주거나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 상담관 또는 민원행정 전문관을 두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사를 그곳에 배치하여 운영한다면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교량적 역할을 통해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갈등관계를 조정해 주고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국민의 생활편익과 권익보호는 물론 행정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첫째,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에 관한 개선이 요구된다. 행정사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잡 다양한 민원행정 및 구제행정들을 잘 수행하여 결국 국민의 생활편익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들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배우는 일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하는 일이 행정사들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정이 확보된 안정적인 교육기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전문분야별 교육교재, 전문분야별 교육 강사 양성 및 확충, 주기적인 교육운영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고, 행정사의 비체계적 관리 등의 미비점도 많은 상태에서 현행 행정사 대한 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별로 일원화 하고, 행정사와 행정사협회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사의 기본소양 교육, 자질 및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숙련된 행정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행정사협회에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행정사와 시험합격 행정사의 차별 및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사 총 수는 353,725명고 이중 경력행정사가 99.5%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사 합격 행정사가 1,850명(0.5%)으로 공무원경력 행정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 중에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행정사가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하 젊은 층의 행정사는 36%의 분포를 이루고 있어 60대 이상 행정사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경력

행정사가 다년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행정사인 반면 시험합격 행정사는 젊음, 패기와 함께 이론적으로 잘 무장되어 높은 경쟁력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이라는 점에서 교육프로그램도 구분해서 운영하거나 동일한 교육체계라면 경력행정사는 이론교육에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시험 합격한 젊은 층의 행정사는 경륜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실무수습 교육에 비중을 높여 상호 차별 심화교육을 하면 행정사 자질향상과 역량강화 측면에서 다소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매년 새로운 제도나 정보공유도 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여 행정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처럼 매년 8시간이상 연수교육을 하도록 하는 제도나 변리사처럼 2년 주기로 24시간의 연수교육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처럼 인터넷 온라인 연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보다 향상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행정사의 자질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사 실무교육 시간조정 및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행정사들에게 행정사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설문조사를 해 보았더니 현행 실무교육시간이 적절하지 않아 교육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시간으로 적정한 시간은 100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200시간 이상도 다수가 있었다.

따라서, 현행 실무교육시간 60시간을 조정하여 실무교육을 통해 행정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소양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유사 전문자격사의 운영사례를 고려하여 적어도 100시간 이상으로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교나 대학원에 행정사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행정사 연수교육에 대해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정식으로 학위 과정을 개설할 경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행정사 관련 학위 신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정사 실무교육시기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업무신고 전 실무교육 시기를 물었더니 행정사 업무신고 직전에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자격취득과 실무교육관계가 행정사 업무신고와 연관된 사항으로 자격을 취득해도 행정사업을 하기 전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사 자격도 유사 전문자격사와 같이 자격취득 후 등록과 동시에 실무교육을 받고 기본지식을 갖추도록 하면 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행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서 행정사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행정사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고 영업을 하게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자격사로서 자격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자격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행정사 교육강사 양성 및 확보이다. 행정사의 업무는 복잡하고 다양한 수많은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 행정사 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강사진 확보도 어렵고, 분야별로 잘 교육된 전문 강사도 없다는 것이어서 행정사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행정사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무원 교육기관이나 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사 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행정사교육의 질적 향상과 행정전문가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행정사 강사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실무행정사, 공무원, 교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강사진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행정사연구소 등의 연구기관도 개설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분야별 행정사 교육과목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행정사업을 하는 행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행정사 교육과목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행정사 교육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구분하여 운영(세미나

토론 포함)하고, 행정사 관련 법률 및 제도변경사항, 행정심판(청구절차 등), 인성 및 창업교육, 행정사 실무요령, 행정사 전문이론(행정법, 행정학, 민법 등), 출입국 관리, 민원행정절차(음주운전, 영업정지, 기타 인허가업무 등), 영업 컨설팅, C.S교육, 입법실무,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다양한 교육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분야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을 위해 행정사연구원 개설과 함께 행정사 교재개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 교재를 전문분야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제안한다.



제 2 절 정책제언

행정사제도는 국민을 바라보고 운영되는 제도이다. 국민의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원칙으로부터 늘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행정절차와 법률에 무지한 일반국민들에게 민원행정의 형식 요건이나 법률요건을 잘 갖추도록 도와주고 행정처분으로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국민의 생활민원 도우미가 공인 행정사인 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전문가로서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도록 행정사에게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보장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앞에서 제안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들로 하여금 행정사들이 법적 한계에 부딪혀 행정사가 수행해야할 국민의 행정민원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행정사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층연구와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위한 『행정사교육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모든 업무의 능률과 품질, 효율성 증대는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행정사는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를 자신감 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사는 행정사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걸맞게 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국민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은 물론 대민행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불편이나 민원행정처리에 대한 형식요건, 법률요건 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의 대민행정 관련 사무는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작성, 신청되어야 행정기관의 민원업무처리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업무에 대하여 잘 교육된 역량 있는 행정사를 배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위한 교육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사제도 활성화로 행정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가야할 길은 행정고시로 공무원에 진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행정 분야와 다른 업종을 바꾸어 취업하는 사례도 많다. 그렇다고 졸업 후 모두 행정고시로 고급공무원에 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행정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성화 한다면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눈에 보일 것이다.

특히, 요즘 외국인들의 국내진입 증가로 인한 출입국관리 업무나 국토개발 및 주택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업무, 민원행정의 인허가 업무, 행정심판 청구업무 등 행정사가 하는 업무 영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각종 법령에 따른 민원행정의 종류만도 수천가지로 일반행정사의 업무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활동분야가 모든 행정 분야에 걸쳐 있어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영역과 시장성도 매우 커서 행정사의 미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최근 5년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민원건수가 평균 48,189건이며, 평균 인용률이 30.5%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논문 설문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행정사들이 주 업무로 수임한 것 중 인허가 민원행정 분야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심판업무가 17%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행정사가 국민의 행정편의는 물론 권리 침해로 인한 행정구제업무 수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사제도가 활성화 되면 행정산업화는 물론 대학교 행정학과 출신들이 졸업 후 취업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학과 출신자가 행정사 교육을 위한 또 다른 직업을 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사제도가 활성화되고 발전해 간다면 국가의 미래 산업의 한 분야로서 국가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가 그동안 긴 역사의 대서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제도의 존폐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시켜 왔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원행정, 구제행정 등의 행정기관을 향하여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행정사의 역할이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과 국민적 차원의 권익보호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사의 국민에 대한 행정도우미 역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에 걸 맞는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 없는 연구와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현철. (2004). 행정사제도의 전망. 『한국행정학회』
- 김광칠. (2004). 행정사 제도의 운영 및 실태. 『한국행정학회』
- 김광호. (2004). 『행정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백유. (2016). 『행정법 총론』, 도서출판 한성
- 김성호. 김문성. (2004). 행정사자격제도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
- 김석규. (2009). 『행정구제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성호, 소순창, 임소정. (2002). 행정사 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영욱. (2004).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행정학과석사학위 논문
- 김영평외 8명. (2004). 행정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류영아, 박해육. (2013). 행정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한 연구
- 이호웅. (2004). 행정사제도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 이재은. (2004). 행정사제도의 나아갈 방향. 『한국행정학회』
- 이재은, 최창수. (2002). 행정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정철근. (2011). 『행정사의 업무실태 및 전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해봉. (2007).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심판기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행정안전부, (2012), 『2012행정사제도 업무편람』

2. 인터넷 자료

네이버 홈페이지(백과사전), www.naver.com

다음 홈페이지(백과사전), www.daum.net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법제처 홈페이지(관련 법률), www.moleg.go.kr

정보공개 홈페이지, www.open.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대한행정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pal.or.kr/>

한국일반행정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oga.or.kr/>

한국행정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fpa.or.kr/>

공인행정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aapak.org/>

전국행정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naa77.co.kr/>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www.kpaa.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https://www.kicpa.or.kr/>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kjaar.kabl.kr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http://www.kcplaa.or.kr/>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www.kacpta.or.kr

부 록 1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 문 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행정사제도의 개선방안과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및 교육 강화방안을 제언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보호 및 통계처리의 목적에만 사용하되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습니다.

부디 전문가들의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본 조사의 성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조 사 자 : 김 창 현(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원행정컨설팅학과)

연락처: 010-9014-3038

지도교수 : 조 문 석(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1. 행정사 협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질문사항과 관련이 깊은 항목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1. 귀하가 소속된 행정사 명칭은 무엇입니까?

- ① 대한행정사협회 ② 일반행정사협회 ③ 공인행정사협회
④ 전국행정사협회 ⑤ 한국행정사협회 ⑥ 대한기술행정사협회
⑦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 ⑧ 기타

질문2. 귀하께서 생각하는 행정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가지를 선택 해 주십시오.

- ① 행정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② 행정사 상호간 협력 및 지원
③ 행정사 간의 정보 교류 ④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⑤ 협회 회원의 권익 보호

질문3. 현재 행정사 협회는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행정사의 개선 방안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행정사 협회를 하나로 단일화 하여 전국의 행정사를 통괄 하도록 해야 한다.
② 변호사협회와 같이 행정사 협회를 단일화 하여 중앙에 두고 각 시도에 지방행정사협회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행정사협회, 기술행정사협회, 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로 기능별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현재와 같이 여러 개 행정사 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질문4. 귀하는 관할관청에 행정사 업무신고 후 행정사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행정사제도 및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질문사항과 관련이 깊은 항목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5. 귀하가 지난 1년 간 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행정사 수입업무 1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행정심판 청구 업무
- ② 토지 형질변경 및 토지보상 심사청구 업무
- ③ 비자 연장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
- ④ 국가유공자 등록 등 보훈심사 청구 업무
- ⑤ 인·허가 민원행정의 신청·청구, 신고 등의 대리(代理)업무
- ⑥ 건설, 환경, 의료 등 분쟁조정 신청업무,
- ⑦ 기타()

질문6. 지난 1년간 귀하께서 응답한 대표적인 수입업무의 1건당 평균 수입료는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미만 ② 100만원~200만원미만 ③ 200만원~300만원미만
- ④ 300만원~500만원미만 ⑤ 500만원~1,000만원미만
- ⑥ 1,000만 원 이상

질문7. 귀하의 행정사 업무 중 행정심판 수입건수는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 ① 5건 미만 ② 5~10건 ③ 10건~20건
- ④ 20건~50건 ⑤ 50건 이상

3. 행정사 교육제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질문사항과 관련이 깊은 항목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8. 현재 행정사법상 실무교육은 기본소양 20시간, 실무수습 40시간 등 총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의 실무교육 시간이 신규 자격을 취득한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지 않다.

(질문 8-1 응답)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질문 8-1 응답)

질문 8-1. 귀하께서 현재의 실무교육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 혹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경우 적절한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60시간 이상 100시간미만 ② 100시간 이상 150시간미만

③ 150시간 이상 200시간미만 ④ 200시간 이상

질문9. 귀하께서는 행정사 업무신고 개시 전에 실시하는 행정사 실무교육을 다음 중 어느 유형의 기관 혹은 단체가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행정안전부) ② 행정사 ③ 대학

④ 행정사 관련 단체(협동조합 등)

⑤ 기타(적을 것: _____)

질문10. 귀하께서는 행정사 자질 및 역량 향상을 위한 행정사 연수교육을 다음 중 어느 유형의 기관 혹은 단체가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행정안전부) ② 행정사 ③ 대학

④ 행정사 관련 단체(협동조합 등)

⑤ 기타(적을 것: _____)

질문11. 귀하께서는 행정사 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정규학
위과정이 개설될 경우 참여 의사가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질문12. 귀하는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질문12-1. 연수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교육기관명을 작성하여 주십시
요.

()

질문13. (질문 12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는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및 고시한 장소에 직접 문
의하여 참여
② 행정사 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참여
③ 행정사 조합 등 행정사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참여
④ 지인의 추천으로
⑤ 기타 (적을 것: _____)

질문14. 귀하는 업무신고 전 실무교육을 언제 참여하셨습니까?

- ① 자격취득 후 즉시 ② 행정사 업무신고 직전
③ 주변 행정사의 권유를 받은 후
④ 기타(적을 것: _____)

질문15. 귀하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연수교

육방법으로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① 집체교육
- ② 사이버(동영상)교육
- ③ 집체교육+사이버 교육
- ④ 기타(적을 것: _____)

질문16. 귀하는 행정사 관련 사이버교육 및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면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행정사 협회 홈페이지 강의 ② 대학교(행정대학) 인터넷 강의
- ③ 사설 행정사 학원 인터넷 강의
- ④ 기타 (적을 것: _____)

질문17. 귀하는 현재 행정사 실무교육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질문18. 귀하는 현재 행정사 연수교육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질문19. 귀하는 행정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받은 후 업무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향상됨 ② 조금 향상됨 ③ 보통
- ④ 변화가 없는 편임 ⑤ 전혀 변화가 없음

질문20. 귀하는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강사로 어느 직종 출신의 강사진을 가장 선호하는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공무원 ② 대학교수(행정분야) ③ 실무행정사 ④ 변호사, ⑤ 기타

질문21. 귀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사 실무교육계획을 매년 교육실시 60일전에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지 않다.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질문22. 귀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사 교육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4. 일반사항

※ 아래 질문사항과 관련이 깊은 항목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학 력	① 고졸미만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연 령	① 20세 이상 ~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 ~ 40세 미만 ③ 40세 이상 ~ 50세 미만 ④ 50세 이상
자격취득 구분	① 공무원 경력(시험면제) ②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
행정사 구분	① 일반행정사 ② 기술행정사 ③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 업무 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 ~ 10년 ③ 10년 ~ 20년 ④ 20년 이상 ⑤ 행정사 자격증만 취득하고 영업 경력은 없음.
활동지역	① 전국어디서나() ② 서울경기지역() ③ 기타 지역()
거주지역	① 서울()구 ② 부산()구 ③ 대구()구 ④ 인천()구 ⑤ 광주()구 ⑥ 대전()구 ⑦ 울산()구 ⑧ 세종() ⑨ 경기()구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특별자치도()

5. 귀하가 그동안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불편을 느꼈거나 행정사
대한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미래발전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
으시면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2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정사제도에 관한 정책제안 의견 모음

연번	정책제안 의견 (설문자 120명중 65명 행정사 발전방안 의견제시)
1	- 행정사를 단일화 하여 행정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필요, - 행정사에 등록되지 않은 행정사는 개업불가 조치 - 행정사에 개업행정사에 대한 가사권을 부여 - 불법적인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 자격 박탈
2	- 공무원 경력 행정사든 시험 행정사든 상호 존경과 신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간혹 시험 행정사들 중 공무원 경력 행정사들에 대하여 실력이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물론 시험행정사들의 이론무장은 인정해야하나 경력 행정사들의 실무경험도 존중되어야 하고, 상생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3	- 협회 실무교육이 너무 질이 떨어진다. - 정말 사업의 기본이 되는 매너 서류작성도 중요하다. - 진짜 실무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 행정관청의 행정사 대리행위 대한 인식 미흡 - 자격 없는 자의 대리행위 제한 공문
5	- 행정심판 대리권, 협회 단일화, 등기업무 업력추가 - 고정업무 확보, 법인설립 개정, 고소장 작성, 각종 절차에서 의견 진술권 확보, 공무원 가산점, 공기업에 행정사로서 취업 - 국회, 지방의회, 행정기관 행정전문관제, 행정상담관제 도입 배치 - 행정사 시험에 주요 업역과목 추가 -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된 경우 타 언어는 해당언어 기준 점수 이상 점수 취득 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험행정사 200명으로 감축
6	- 국가적 지원책이 필요, 직종별 세분화 필요
7	- 협회 통감을 통한 행정사 권익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8	- 협회 단일화,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필요
9	- 행정 사업에 대한 홍보, 협회 단일화, 대리권 확보
10	- 행정사 대리권 부여, 일원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제화
11	- 행정사 교육체계 강화
12	- 행정교육제도 개선, 연수교육제도 강화
13	- 행정사 교육 프로그램 강사진 양성
14	- 전화하는 고객보다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행정사의 의지와 네트워크 구축 필요

15	- 교육 강화 및 협회의 리더십이 필요함
16	- 협회의 왕성활동으로 기타 자격자의 업무 침해가 없어야함
17	- 협회의 일원화
18	- 행정사의 권익과 업무영역 침해방지법 개정
19	-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처럼 행정사의 대리권을 부여
20	- 행정사 교육강화, 협회의 리더십 필요
21	- 행정사들의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법제정
22	- 행정사 교육 강화
23	- 대학에서 프로그램 많이 개설
24	- 교육 및 권익 강화
25	- 협회의 노력필요
26	- 업무영역 확보 등 관련법 개정
27	- 협회의 대정부 활동 필요
28	- 행정사의 업무영역의 다변화 필요
29	- 행정사 교육시스템 개선
30	- 행정사 협회 통폐합, 대리권부여, 법인설립허용, 인식개선 필요
31	- 행정사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시에 설명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시행령에 ~~~제출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이라고 시행령을 개정해야합니다.
32	- 공인노무사법 개정과정에서 보듯이, 타자격사들과 업역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33	- 행정사들의 기본 소양 부족, 행정사의 단일화
34	- 행정사 업역보호/사회적 홍보
35	- 단일화 우선
36	- 관공서의 협력을 끌어내기 힘들, 독자적으로 해나갈 업무가 적고 배타적이다
37	- 타업종과 이해관계 대립 시 대응이 저조함, 시장 개척이 어려움, - 시대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38	- 협회의 공익적 사명 추구
39	- 협회 단일화, 개업 행정사 협회가입 의무화, 상별규정 만들기
40	- 행정 심판의 대리권은 꼭 쟁취되어야한다

41	- 행정사의 폐업율은 높다고 생각되고 행정사무소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메뉴얼화 하거나 시스템적으로 정비하여 전체적 사업성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2	- 대리권 부여
43	- 행정 사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변호사들의 법무법인처럼 행정사 법인 형태도 진행되어야 하며, - 행정사가 단일화 되어 권익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	- 협회차원의 행정사 인식 홍보 필요, 실무교육및 수습이 필요
45	- 행정사 협회 활동 미미함
46	- 협회의 단일화
47	- 역량강화가 참 쉽지 않네요
48	- 행정 사법이 개정을 또 앞두고 있으나 최소 2016년 추석 전 즈음에 올라온 대리권 법인화 협회 통합 이란 큰 이슈에서 변호사 단체의 항의와 국정농단 정사법이 개정을 또 앞두고 있으나 최소 2016년 추석 전 즈음에 올라온 대리권, 법인화, 협회통합이란 큰 이슈에서 변호사단체의 항의와 국정농단 사태가 이어져서 잠시 소강되었고 - 2017. 5. 18. 행정사법 재입법예고안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권이 빠지고 올라왔을 때 8개의 협회장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 일개 나부랭이 행정사들이 서울시 서소문 제2별관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의견을 전달 했으나, 이후 협회에서 피드백은 없다. - 2017.12.21.대전 통계청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주도하였다. - 2023년까지 통계청은 행정사를 사무종사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 이윽고 행정심판을 걸었으나, 각하되었다. 이유는 고시의 처분성 때문이다. - 각하 당할 것을 예상해서 청구서+보충서면은 약500페이지정도 썼고 거기에는 고시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를 상당히 많이 넣었으나 각하되었다. - 그 당시 내가속한 협회에선 날 쫓아내었다. 이유는 연임하고자 하던 회장이 선관위의 구성부터 선거에 나오는 요건을 맘대로 마치 장난 하듯하여서 내가 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 법무부에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행정사가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행정사가 있었다. - 당연히 법무부는 안된다고 답을하였다. 이후 본인은 수많은 행정사의 서명을 직접 받아서 행정심판에 대하여 온라인 - 자동차등록소 내무자격자등(오복사,은하사,선덕사등 과거부터 등록대행을 일삼던 무자격 자들)에 대한 척격을 위하여 약380여명의 서명을 다른 행정사님과 함께 전국에서 받아서 행안부로 보냈으나 답이 요상하다. - 이의신청이란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심판이 48개법에서 86개정도 된다고 한다. - 행안부는 이의신청이 행정사법시행령에 있는 부분이니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아쉽게도 실무를 하고 있는 행정사들중 많은 이들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과 각 개별법의 이의신청과의 차이조차 알지 못한다.

	- 법무사법 개정안은 2018.1.20.에 올라왔다. 즉시 국회를 찾아 가고 서면을 제출하고 틀린부분을 외워서 말하니 다른 조문들도 물어왔다. 2019년 현재 법무사법 개정안은 거의다 막았다. 정확히 행정사와 관련된 것은 모두 막았다. 다행이다. 행정사는 행정사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법무사법에 따라 행정 형벌에 처할 법 개정안이었다.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으로 약5개월간 국회, 지역구 사무실 등을 돌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 행정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고생한 이들에 대한 것은 내가 증인이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기억 할 것이다. - 행정사법 개정에 대한 행안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울산출신 권모의원이 극히 반대한다고 한다. 이유는 전관예우에 대한 운운과 전문성이다. 즉 협회통합을 반대 하는 것이고 이유는 정당하지 않다. 이를 극복해 봐야겠다. 세경주어서 일 시킨 마당쇠가 헌법상 국가기관 운운한다. 그렇다면 나는 국가의 요소이다. <행정사계의 일들입니다. 이외 개인행정사로 월수입은 평균 일천은 넘습니다. 학문을 위해 설문하시는 모습에 응원을 드리나 현실은 더욱 더 치열하단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드림.
49	- 실제 수임 시 필요한 교육 필요
50	- 업무 범위가 너무 모호함, 공무원 경력자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면 안됨, - 행정사 개업을 2년 이상 한 사람에게 자격부여하고 개업할 수 있는 날로 5년이 경과하면 자격증이 소멸되도록 해야 함.
51	- 협회 통합 필요
52	- 협회 통일 필요, 권익보호 필요
53	- 협회 통합 필요
54	- 협회의 단일화
55	- 공무원들의 인허가 관련 신청 여부 시 대리권이 없는 사람들의 서류를 받아주어 문제임
56	- 행정사들의 영역이 모호함, 행정사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 포럼 등의 현 실태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7	- 일반 국민들의 행정상 불편과 부담함을 해소해주시기 위해서는 행정사 협회의 일원화가 필요함
58	- 협회의 단일화 필요
59	- 협회 단일화, 일반행정 대리권, 법정 수수료 정합, 실무교육 강화
60	- 체계적 이론 및 실무 교육 필요, 정부 지원받는 교육필요
61	- 협회차원의 교육및 지원 부족, 적절한 교육필요
62	- 협회의 행정사 권익 및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3	- 실무 중심 교육필요, 협회하나로 통일, 행정사가 청구인의 대리인이 되도록 법제화 필요
64	- 행정기능 일부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기관을 두고 있다, 제도적 장치 또는 협회의 활동이 있었으면 한다.
65	- 행정사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행정사 간에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다고 해도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들의 자질 향상이 필요하고 도덕적인 부분도 고려 되어야 합니다. - 일부 행정사들의 행위로 전체가 매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66	- 행정사의 전문지식 부족
67	- 행정사 협회가 교육만 하기 보단 정회원간이라도 정보교류와 화합을 만드는 시간 필요, 행정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노력 없는 사람이 많음
68	- 행정청에서 행정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69	-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행정사 협회 중앙회와 지방 행정사회 운영, 행정사 법인화 필요,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질적 향상 필요
70	- 행정사협회를 단일화 하는 것, 행정법인 설립허용, 단일화 협회에 꼭 등록해야하는 법 설치 실무연수 실시
71	- 행정사협회 단일화
72	- 행정사 교육 제도 획기적 개선
73	- 심판 대리권 부여, 협회 일원화
74	- 행정사 대리권 부여 필요
75	- 첫째, 협회 난립으로 행정사 업역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 둘째, 협회가 단일화 되지 않음으로서 업역확장이나 행정사 권익보호,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 셋째, 행정업무에 지식이 없는 업종 출신 경력직 행정사들에 대한 실무 및 보수교육 부재로 행정사의 자질문제가 자주 거론 - 따라서, 협회의 단일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의무 및 보수교육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단일화 된 행정사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업무위탁을 통해 행정사 일거리 보장은 물론 행정력을 보완하는 기능회복이 중요함
76	1) 협회 단일화 되어야 한다. 2) 협회 단일화 후 회원 권익보호와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최우선해야 한다. 3) 행정사 자격은 하나로 통일하되 세부자격을 두어야 한다.(군인은 군인업무, 경찰은 경찰업무, 세무직은 세무업무, 교육직은 교육업무, 기술직은 기술업무, 일반직은 일반행정업무 등~왜냐고요,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니 문제이지요) 4)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행정사업을 해야 한다. 변호사와 같이 도둑놈이란 소리를 들으면 행정사는 필요가 없다. 5) 공무원 경력(시험면제) 행정사는 무료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수익을 내기위한 행정사는 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에서 터득한 경험을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행정사업을 할 때 국민은 행정사를 신뢰하므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행정사가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6) 공무원경력(시험면제)은 최소한 20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시험면제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경험이 없으므로 공무원경력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문연수교육을 6개월이상 받은 후 행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행정사 자격증을 임대하여 주는 행정사는 적발하여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9) 전국 중앙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는 본인이나 행정사가 아니면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10) 협회가 단일화 되면 무자격 불법행정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정부가 위임해야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 Focusing on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s –

Kim, Chang-Hyun

Major in Civil Service Administration Consulting

Dept. of Civil Service Administration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global era of the 21st century is the 4th industrial age led by human mechan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zation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demand for administration is becoming complicated and diverse in quantity and quality. The needs and wants that the public expects from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re also diversified and specialized. At the same time, complaints in various fields, such as respecting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are constitutional values, have increased rapidly through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councils and so on.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is the national system that serves as an effec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to various civil administrations in order to solve the complex civil rel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people. An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is a person who is nationally qualified to carry out such acting or act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is operating efficiently for the purpose defined in Article 1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law and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The problems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were derived from three aspec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ere presented.

Firs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The scrivenery began in 1897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crivener office rules.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was introduced in 1961 with the enactment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law. At the time when illiteracy was high, the task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was mainly to write a document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n, since the name changed to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ct of 1995, scriveners have been required to prepare and submit documents to all administrative agencies, act on behalf of licensed civil administration, translation, administrative counseling, consultancy, fact-finding and confirm in affairs.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undergoes change and innovation as it is classified as three types of general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technical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nd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nd as advanced administrative works are performed. The system, which only qualified experienced civil servants before, has settled down in 2013 as a complet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to become an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through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of the general public.

However, in 1999, after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law went into effect,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registration system disappeared and became a notification system. For this reason, notification can only be made in municipalities, and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ssociation has no registration authority. As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ssociation is not activated, the operation distributed to the seven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ssociations has a problem in that the active management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is difficult and inconsistent due to the diversity of the system and the closure of the performance.

A survey of 120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in this study found that 92.5% of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required registration and unification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ssociation. A number of respondents requir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① granting the registration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ssociation, ② unifying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ssociation, ③ granting the administrative referee authority, and, ④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corporation.

Second, there is a problem regard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According to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t the end of 2018, there is a total of 353,725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351,875 experienced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and 1,850 new test passed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The most common is general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which is 349,995 (99%), the technical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are 3,207 (0.9%), and the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are 523 (0.1%).

Development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begins with the activation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However, out of the 353,725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only 2.5% (8,789) of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actually report to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arry out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business. Among business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64% is in their 60s or older. Only 1,467 young people in their 40s or younger are 16.7%. In other words, the infrastructure on which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are activated and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develops is very weak and the environment is poor.

Third, it is a matter of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 program.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work involves not only the preparation of documents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were conducted during the initial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but also the various and complex administrative functions in all administrative fields, including the handling of 5,445 complaints and the various authorizations and permits derived therefrom. It has expanded into a advanced administrative specialty for carrying out work. There is

a need for specialized training in these areas. However,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education system, which includes 60 hours of practical training and voluntary in-service training, is only a passage for reporting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There is no current training system for quality improvement and capacity building. Therefore,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regarding educational programs for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Survey results showed that ① 7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training time is not appropriate. ② 34.5% of the respondents said the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more than 200 hours. ③ 59.8%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should combine group education and cyber education. 77.5% was not satisfied with the practical education.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ractical education.

Therefore, on the basis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research results, improvement measures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proposed by dividing them into aspects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and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education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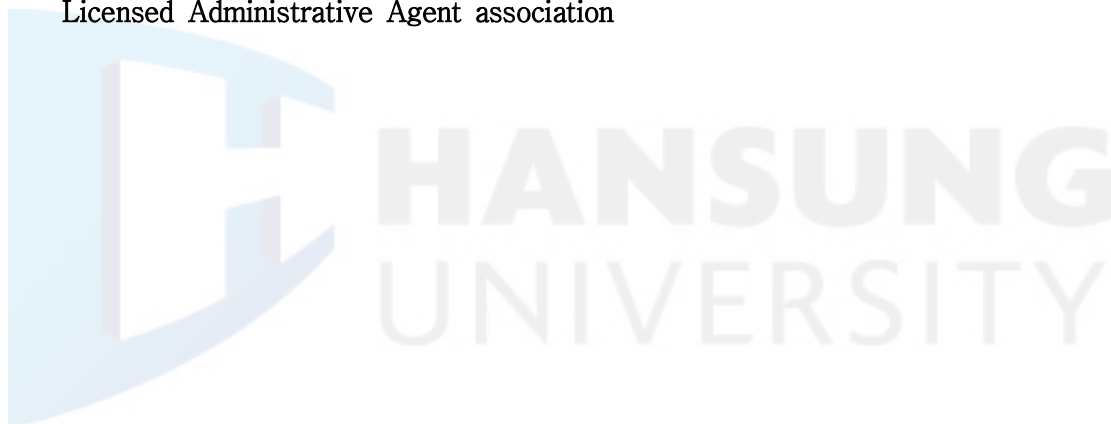
First, improvement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include ①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ssociation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② unification of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ssociation, ③ grant of administrative referee authority for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④ activation and administrative industrialization of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to create jobs, ⑤ civil service counselors or professional control in administrative agencies,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Second, improvement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education program include ① implementing capacity training for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agencies, ② the educational system for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③ discrimination of education between experienced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and test passed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④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training coordination, ⑤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training and training institutions, ⑥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curriculum in universities or graduate schools, ⑦ adjustment of time of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training, ⑧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education program for

satisfaction enhancement, ⑨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education system for the training instructor, and ⑩ development of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education courses for each field.

As mentioned above, the research projects should be reviewed for 15 items on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and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education program. Constant research and improvement should be continued to actively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as a trusted system.

Key words :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law,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ystem,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operating condition,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education program,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ssociation



감사의 글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더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했던가! 꿈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어(成語)들을 주춧돌 삼아 삶을 개척하고 『하면 된다는』는 신념과 인생철학을 가슴에 안고 삶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며 열심히 인생을 노 저으며 살아가면서, 35년간의 공무원 생활 서기관으로 영예롭게 퇴직하고 인생 이모작을 꿈꾸며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고 파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 조명회사에 취업하여 출근한지 어느덧 5년의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제 나이 66세, 그 바쁜 와중에 지인의 추천으로 미래의 직업으로 각광 받을 『행정사』 자격사와 관련하여 “한성대 지식서비스 & 컨설팅대학원에 개설한 『민원 행정 서비스 최고전문가 과정』 1년을 수료하면서 행정사에 대한 눈을 뜨고 공무원으로서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일하는 방식을 터득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고급 직업인으로서 노후를 준비하면 사과처럼 곱게 익어갈 수 있겠다는 심정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진학을 하여 옹골찬 용기와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열강을 통해 도와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의 성원과 응원 속에 잘 할 수 있었으며, 함께 부대끼며 공부한 동기 원우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4학기 동안 이탈하지 않고 원만하게 버티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사로서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준비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행정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립과 궁금증을 풀어헤치고 그 행정사가 나아가야 할 등불을 밝히기 위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쓰기로 결심하고 여러차례 갈등하면서도 나를 위하고 후학들을 위하여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자 아파도 딛고 일어나 학문의 역사를 남기고 가야 할 길이기에 그 어렵다던 논문을 쓰기로 했지만 과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내에 시험문제를

다 풀고 시험이 끝나는 시점의 느낌으로 지금 감사의 글을 쓰노라니 논문작성이 완성으로 가고 있음을 실감하며 고진감래(苦盡甘來)이런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먼저 연구논문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검토하며 논문지도를 해주신 조문석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흡한 점이 많은 논문을 “연구논문 자체는 좋은 원석이라 하시면서 보석처럼 갈고 닦아 모든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논문으로 완성시켜 보라”고 예리한 판단과 경륜으로 조목조목 꼼꼼하게 챙겨주신 윤경준 심사위원장님과 논문의 체계적인 작성원칙을 제시하시며 하나하나 보살펴 주신 한명진 심사위원님, 조문석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졸작일지 모르지만 한 송이의 석사학위 꽃을 피우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며 온 몸이 과감치처럼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늘 열심히 하라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뒷바라지 해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 조영애 여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밤새워 논문을 쓰고 있는 아버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응원해 준 두 아들, 변호사시험 준비에 고군분투하며 몰두하고 있는 큰아들 김재훈과 어렵게 약국을 개업하여 열심히 경영을 잘 하고 있는 둘째아들 한약사 김재명에게도 고마움과 함께 모두 성공의 길이 되길 기원하며 아버지의 용기와 희망으로 좋은 기운을 전해봅니다.

또한, 함께 공부하며 석사학위 논문 잘 쓰라고 응원해 주신 민원행정 컨설팅학과 동기 원우님들과 연구논문 설문조사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주신 황해봉 교수님, 조영중 교수님, 이종두 교수님, 남효돈 행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응답해 주신 120여명의 행정사님들과 연말 바쁘신 중에도 논문작성 및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명진인쇄 조종현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저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우리 아버님께도 감사하고, 연로하신 몸 이끌고 지금 병석에 누워계신 우리 어머님께도 조속한 쾌유를 빌며 감사드립니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유봉자원방래 불역낙호?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찾아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논어 학이(學而)편 중에서>

나 또한, 직장에 다니면서 주경야독으로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원우회 대표를 맡아 원우들과 친구 되어 서로 부대끼며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지 아니한가! 밤새도록 쓰고 가다듬어 보석처럼 빛나는 한편의 논문으로
만들어 가는 숨 막히는 순간들을 맛보면서 이루어 낸 석사학위 논문, 이것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고 호시우보(虎視牛步)로 묵묵히 다져온
시간들이 더욱 보람차고 군자답지 아니한가!

끝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국가정책으로
성안되어 행정사제도의 활성화와 행정의 산업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행정 분야의
일자리 창출, 서민들의 민생안정 및 권익보호, 행정기관의 행정편의 및 효율성
제고 등의 국가의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김창현 배상